

II

2024년도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024년도 언론 관련 판결 사례

1. 손해배상청구
2. 보도게재청구
3. 기사삭제청구
4. 기타 참고 판결

1. 손해배상청구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232393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3나2055321

방송 보도로 영업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매출 감소와 관계된 보도 외부의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해야 한다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피고 방송사는 2020년 9월 4일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관공서에 대거 설치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가 무허가 제품이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보도 화면에는 원고 제품과 외관이 유사한 장비가 약 20초간 클로즈업되어 송출되었고, 제품명이나 제조사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청자가 원고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의 보도 직후 매출이 급감하자, 원고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제품에 대한 신뢰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재산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4억여 원과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4,400만 원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와 그에 따른 사업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총 4,9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의 변화, 대규모 거래 부재 등 보도 외 요인도 매출 감소에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를 4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2심 판결 선고 후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요지]

-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이나 판매중단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도하였고, 보도 화면에 원고 제품을 약 20초간 노출시켜 적지 않은 분량임을 언급하였다. 덧붙여 보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것은 타 회사의 제품이지만 해당 제품명 자체가 열화상 카메라의 한 유형을 뜻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꾸준히 증가세였던 원고의 제품 매출액이 이 사건 보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며, 피고들이 공신력 높은 보도전문채널인 점을 고려할 때 보도로 인한 파급력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원고의 제품은 수급이 해소되고 나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하였는데, 원고의 제품에 대한 매출액 감소는 코로나19 상황(확진자 수, 정부 대응 정책,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내용도 판시하였다. 이에 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2020년 9월 대비 10월의 매출액 감소분에 원고의 2020년도 영업이익률(약 26.4%)을 곱한 금액의 10%인 4,400만 원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와 그에 따른 사업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총 4,9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하였다.
- 2심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 변화, 대규모 거래 부재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할 때, 원고 매출 감소와 보도 사이 인과관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4천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해당 방송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결국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일부를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재산상 손해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 한해 인용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2가단232393 손해배상(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2023.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¹⁾ 원고에게 437,912,73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은 D TV 채널을 통해 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이고, 주식회사 C는 D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 2022. 6. 10. 피고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되었다.
- 나. 피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는, 2020. 9. 4. 'E' 프로그램에서 'F'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하고, 같은 날 인터넷 D 웹사이트 사회면(인터넷주소

1) 주식회사 C를 피고 주식회사 B이 수계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따로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 2 생략)에 「G」라는 제목으로 위 보도를 게재하였다.
- 다. 이 사건 보도에서 허가 여부 및 성능과 관련한 직접적인 보도의 대상이 된 것은 주식회사 H의 'I'라는 제품일 뿐 원고가 생산한 제품은 아니었는데, 이 사건 보도의 영상 2:25~2:45 사이에 주식회사 H의 제품이 아닌 원고 제품의 영상이 노출되었다.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이나 판매중단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라. 원고는 2020. 5.월부터 이 사건 보도의 영상에 노출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2020. 5월부터 2020. 12월까지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와 원고의 방역장비(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20.5.	2020.6.	2020.7.	2020.8.	2020.9.	2020.10.	2020.11.	2020.12.
코로나19 확진자 수 (단위:명)	703	1,334	1,506	5,642	3,865	2,714	7,768	26,564
방역장비 매출액 (단위:천원)	627,637 ²⁾	790,169	1,711,051	1,900,501	2,087,338	414,741	695,127	1,101,34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제품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고발이나 판매중단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 1, 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2020년 9월 대비 2020년 10월 매출액 감소분 1,658,760,361원(=2,076,732,908원-417,972,547원)에 원고의 2020년도 영업이익률 약 26.4%(=2020년도 원고의 영업이익 2,765,086,110원 ÷

2) 2020. 5.의 경우는 다른 시기와 달리 방역장비 매출액과 일반품목 매출액을 합산하였다.

2020년도 원고의 총 매출 10,455,732,393원×100을 곱한 금액(437,912,735원)의 약 10% 정도인 44,000,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

- ① 3분 53초 분량의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의 제품이 노출된 영상은 약 20초 가량으로 적지 않은 분량이다. 이 사건 보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것은 주식회사 H의 'I'라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I'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 특정 회사의 제품 이름이 아니라 'J'와 'K'의 합성어 즉, 간단하고 편리하게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열화상 카메라의 한 유형을 뜻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2020. 5월부터 제품을 판매하였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월부터 2020. 9월까지 원고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 후인 2020. 10월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원고의 제품과 같은 방역장비에 대한 구매 수요는 코로나 19의 초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공신력이 높은 보도전문채널로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한 파급력이 적다고 볼 수 없다.
- ②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의하면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체온의 측정을 표방하며 그와 같은 목적과 용도로 판매·사용되는 경우 의료기기로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보도 중 허위 사실 부분의 적시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제품은 체온 측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보도에 직접적으로 제조 회사인 원고의 회사 이름이나 제품의 명칭이 노출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제품이 노출된 장면이 이어 보도대상 제품의 상품명인 'I'가 클로즈업 되었다. 또한 원고의 제품은 소모품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수요가 해소되고 나면 원고의 제품과 같은 종류의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제품에 대한 매출 감소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의 증감뿐만 아니라, 정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정책,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³⁾

2) 위자료

이 사건 보도로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악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종류 및 성격, 원고의 지명도, 영업상의 신용도,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의 정도, 이 사건 보도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 이 사건 보도 후의 조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2020. 7월~9월 원고의 매출이 급증한 이유는 8. 15. 광복절 집회를 전후한 '2차 대유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 9월의 경우 8월에 비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다. 이는 비교적 고가의 장비인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감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9. 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23나2055321 손해배상(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⁴⁾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23239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를 공동피고로 소 제기하였으나,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B에 합병되어 주식회사 B이 소송수계하였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⁵⁾

피고는 원고에게 437,912,73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912,73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면 12~13행 중 “피고 주식회사 B”을 “피고”로 수정하고, 그 이하에 기재된 각 “피고 주식회사 B”을 “피고”로 모두 수정한다.

5) 원고는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8,000만 원)과 위자료(2,000만 원) 청구를 하다가 2023. 8. 14.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재산상 손해배상(437,912,735원)만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다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417,912,735원으로 감축하고 위자료 20,000,000원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3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을 “피고”로 수정하고, 그 이하에 기재된 각 “피고 주식회사 B”을 “피고”로 모두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11행의 “10호증”을 “10, 12, 13호증(가치번호 포함)”으로 수정하고, 13~16행의 “2020년 9월 ~ 산정한다.”를 “원고의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산정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12행의 “클로즈업 되었다.” 다음에 “한편, 체온측정기 내지 열화상 카메라는 대부분 유사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어 일반 시청자들은 이 사건 보도만으로 원고의 제품을 곧바로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코로나 19 2차 대유행이 있었던 2020. 8. 중순부터 9월, 3차 대유행이 있었던 같은 해 12월의 원고 매출액이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바, 원고의 제품과 같은 열화상 카메라의 판매량은 국내외 코로나 19 확산세에 밀접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이 급격한 매출 상승을 보인 직후인 2020. 10.과 2021. 1.에는 원고의 매출액이 상당히 낮았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열화상 카메라 등의 장비에 대한 수요가 해소되어 시장 전체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2020. 10. 매출액 감소는 이 사건 보도 이외에도 코로나 19 진정세와 대규모 거래의 부재 등의 다양한 사정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의 2020. 9. 대비 2020. 10. 매출액 감소분 1,658,760,361원(=2,076,732,908원 - 417,972,547원)에 원고의 2020년도 영업이익률 약 26.4% [= 2020년도 원고의 영업 이익 2,765,086,110원 ÷ 2020년도 원고의 총 매출 10,455,732,393원 × 100]을 곱한 금액 (437,912,735원)의 약 10%를 하회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서 5면 본문 밑에서 3행부터 6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위자료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악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도가 2020. 9. 4.경 이루어졌고 원고가 같은 날 위 방송 사실을 알았는데, 원고가 법원에서 2024. 9. 2.에 한 위자료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민법 제766조 제1항),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가 2020. 9. 4. 방송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2024. 9. 2. 자 보정서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사실을 알게 된 2020. 9. 4.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2. 4.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8,000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의 합계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 사건 2023. 8.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 금액을 437,912,735원으로 확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였는바, 위 위자료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1가합546523

절도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실존 인물의 식별 가능한 일러스트를 사용한 행위는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 그 일러스트로 인식된 인물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대중이 오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 개요]

원고 B는 전직 고위 공직자이고 원고 C는 그의 딸이다. 피고 신문사와 소속 기자는 2021년 6월 3인조 절도단이 성매매를 시도하는 50대 남성 등을 상대로 저지른 절도범행을 다룬 기사를 게재하였다. 당초 이 사건 기사에는 일러스트가 삽입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온라인 기사에 원고의 외형과 유사한 인물의 외형을 담은 일러스트를 삽입하고 약 2시간 30분 후 교체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기사 속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일러스트가 원고들을 식별 가능하게 묘사하였고, 해당 기사와 결합하여 공표된 것은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기사에 묘사된 범행 관련 내용은 원고들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B에게 700만 원, 원고 C에게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1심 판결 선고 후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요지]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묘사·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법원은 기사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대해 기사 내용과 일러스트를 종합하더라도 원고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독자들이 실제로 이를 오인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일러스트가 원고들의 외모와 상당히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어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고, 해당 범행과 일러스트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었으며 해당 일러스트가 사용될 만한 필요성·상당성·보충성·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또 피고들이 출처와 내용 확인을 통해 해당 일러스트가 원고들을 묘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기사에 사용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일러스트의 노출 시간, 피고 언론사의 영향력,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 B에게는 700만 원을, 원고 C에게는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1가합546523 손해배상(기)		
원	고	B C		
피	고	주식회사 D E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6. 21.부터 2024. 8.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원고 B은 F, G을 역임한 자이고, 원고 C은 원고 B의 딸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문 발행업, 뉴미디어, 정보통신 관련 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간지 'H'(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웹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3) 주식회사 J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도업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있고, 피고 E는 주식회사 J에 소속된 기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21. 2. 27.자 칼럼 게재

- 1) 피고 회사는 2021. 2. 27. K이 기고한 「L」라는 제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칼럼(이하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을 이 사건 신문 및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 2) 이 사건 칼럼에 삽입된 위 목록 제2항 기재 일러스트(이하 '이 사건 일러스트'라 한다)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과 턱수염을 기른 남성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정장 차림으로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전화를 하고 있는 남성의 뒷모습(이하 위 남성들을 순차로 '제1, 2, 3 쟁점 남성'이라 한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전화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하 '쟁점 여성'이라 한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2021. 6. 21.자 기사 보도

- 1) 피고 회사는 2021. 6. 21. 피고 E가 작성한 「M」라는 제하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이 사건 신문 및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 2) 이 사건 기사에는 20세 여성 1명, 21세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 절도단이 성매매를 시도하는 50대 남성 등을 상대로 저지른 절도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이 보도되어 있다.
- 3) 당초 이 사건 기사에는 아무런 일러스트가 삽입되지 않았으나, 피고 E는 2021. 6. 21. 06:27경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위 기사(이하 '이 사건 온라인 기사'라 한다)에 이 사건 일러스트를 삽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지난 후 이를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 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일러스트의 제3 쟁점 남성은 원고 B을, 쟁점 여성은 원고 C을 각 묘사한 것으로, 위 일러스트가 사용된 이 사건 온라인 기사에는 ‘원고 B은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원고 C은 성매매를 시도하는 남성을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하 ‘쟁점 사실’이라 한다)이 적시되었거나, 독자들이 이 사건 온라인 기사를 읽고 위와 같은 연상을 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권 내지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온라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게시한 자들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명예권 내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각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이 사건 일러스트를 통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서 이 사건 일러스트를 통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 사건 일러스트의 제3 쟁점 남성은 원고 B을, 쟁점 여성은 원고 C을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일러스트가 최초로 사용되었던 이 사건 칼럼은 원고들이 원고 C의 N 의혹에 대처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O에서 방영된 드라마 「P」 중 ‘Q’이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조부로 인하여 부모의 목숨을 잃은 노비 출신의 미군 대위 ‘R’라는 등장인물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칼럼의 내용예다가 위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 및 그 등장인물들의 극 중 직업, 제1, 2 쟁점 남성의 복식 및 외양 등을 보태어 보면, 제1 쟁점 남성은 R, 제2 쟁점 남성은 Q, 제3 쟁점 남성은 원고 B, 쟁점 여성은 원고 C을 각각 가리킨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 제3 쟁점 남성 및 쟁점 여성의 의복,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구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러스트 중 원고들을 묘사한 부분은 원고들의 각 사진(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진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공중에 알려진 이상 일반인들은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이 사건 일러스트만으로도 원고들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S’에 같은 내용으로 게시된 이 사건 온라인 기사에는 이 사건 일러스트가 교체되기 전에도 「가운데 모자 쓴 여자(쟁점 여성을 가리킨다)는 C이고 뒤돌아서서 가방메고 있는건(제3 쟁점 남성을 가리킨다) B 아님?ㅋㅋ 사진 보고 따라

그런저 같은데」 등과 같이 원고들을 묘사한 것임을 알아챈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댓글(갑 제6호증의 1 6, 10, 14, 17면 등 참조)이 달리기도 하였고, 피고 E도 이 사건 온라인 기사에 이 사건 일러스트를 삽입한 이후에 동료 기자로부터 '(이 사건 일러스트 속 인물들이)원고들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라) 또한 피고 회사 스스로도 2021. 6. 23. 및 2021. 6. 30.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온라인 기사에 이 사건 일러스트가 삽입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신문 등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원고들의 명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온라인 기사에는 50대 남성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20세 여성이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적시되어 있는데, 원고 C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 이미 20대 후반이었던 점, ② 원고 C에 대하여는 N 의혹이 불거진 바 있으므로 독자들이 원고 C의 정확한 나이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20세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원고들은 부녀지간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있다고 인식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일러스트에 원고들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 독자들도 일러스트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하는 댓글을 남겼을 뿐, 원고 C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등의 댓글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온라인 기사에 쟁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러스트에는 원고들이 묘사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온라인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3

쟁점 남성은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 쟁점 여성은 성매매를 시도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로 묘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일러스트나 그 원전인 이 사건 사진이 이 사건 범행을 보도하기 위하여 묘사 내지 촬영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일러스트가 이 사건 범행을 보도하는 데에 사용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자들로서 초상권의 제한을 일부 감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보도하는 데에 자신들을 묘사한 이 사건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범행의 보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일러스트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및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E는 이 사건 온라인 기사에 이 사건 일러스트를 삽입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 사건 일러스트가 삽입된 이 사건 온라인 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일러스트를 함부로 공표함으로써 원고들이 가지는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나아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일러스트는 애초에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 점, ② 피고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사건 일러스트와 관련하여 「L」는 설명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설명은 이 사건 칼럼의 제목과 동일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일러스트의 사용에 앞서 그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④ 더구나 위 설명에 원고 C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출처 확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일러스트에 묘사된 인물이 원고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 적어도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 1) 이 사건 범행을 보도하는 이 사건 온라인 기사에 원고들이 묘사된 이 사건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웹사이트에 게시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함에 따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일러스트가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길지 않았거나 이 사건 일러스트가 교체된 이후 원고 B이 자신의 SNS에 이를 문제 삼는 게시물을 올린 탓에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에 이른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단 이 사건 온라인 기사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공중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더구나 일부 독자들은 이 사건 일러스트가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일러스트에 원고들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한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일러스트가 삽입된 이 사건 온라인 기사의 내용, 원고들과 이 사건 일러스트 속 인물들 사이의 유사도, 이 사건 일러스트가 이 사건 웹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던 시간적 간격, 피고 E가 이 사건 일러스트에 원고들이 묘사되어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온라인 기사에 이 사건 일러스트를 삽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일러스트가 문제된 이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문 및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원고들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보도한 점, 이 사건 일러스트로 인한 논란의 확산 경위, 피고 회사가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 B에 대하여는 700만 원, 원고 C에 대하여는 1,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온라인 기사를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자로서, 피고 E는 이 사건 온라인 기사에 이 사건 일러스트를 삽입한 자로서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 B에게 7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6.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101289

공적 인물이 아닌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허위 이력을 방송한 것은 다소간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악의적인 비방 내지 공격에 해당한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남성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인물이다. 피고 지상파 방송사는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시위 장면과 인터뷰, 모친 대역 배우의 재연 등을 방영하였다. 방송에서는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가명을 사용했으나, 음성을 변조하지 않아 주변인이 볼 때 충분히 원고임을 식별할 수 있었고 방송의 내용에는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사실과 다른 진로 이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명예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와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을 이유로 제작진과 방송사, 관계사, OTT 회사 등을 상대로 총 3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해명광고, 동영상 내용의 일부 삭제를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집주소를 공유하여 모친을 따로 인터뷰하게 한 사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원고의 이력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 및 내밀한 사생활의 공개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명예훼손과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1심 판결 이후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 법원 계류 중이다.

[판결요지]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문제가 되는 당해 표현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출 정보의 성격·확산 범위·추가 침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로 전보할 만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증명되어야 한다.

- 1심 법원은 방송 초반 실제 시위 장면에서 원고의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고, ‘원고와 단 둘이 사는 노모’ 등 원고에 대한 소개 내용에 비추어 원고를 아는 사람들이 원고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피고 제작진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주소를 다른 제작진에게 제공하여 해당 제작진들이 원고 몰래 원고의 모친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기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또 법원은 “40대를 노랑진에서 보냈다”를 비롯한 원고의 진로 관련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결혼 및 성적 취향, 원고가 준비했던 시험 등과 관련된 내용은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고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공개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을 공중이 알아야 할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개인적 배경을 조사·보도하여야 할 다소간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까지 방송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내지는 공격에 해당한다며, 방송으로 침해될 원고의 인격적 가치가 방송으로 달성될 공익에 비해 현저히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제작진들과 방송사가 공동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구제 방법과 관련하여, 법원은 해명광고는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청자들이 보유한 동영상 원본 파일 중 일부 삭제 요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또한, 피고들 중 계열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없어 기각하고, 방송을 제공한 OTT 회사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에 따라 지상파 콘텐츠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사전심사사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동불법행위를 부정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3가합10128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C D E F G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 B, C, D, E, F, G, H, I, 주식회사 J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2024. 10.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K 및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주식회사 J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K 및 피고 L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B, C, D, E, F, G, H, I,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 한다)는 공동하여,
 - 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M'의 본방송 및 재방송 첫 화면 하단에 청색바탕에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체는 'M'의 본방송 화면 아래쪽에 기재되는 자막과 동일하게 하여 작성된 별지 1 해명광고문을 표시하되,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 글자크기를 조절하고, 이와 동시에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하여금 위 해명광고문을 위 방송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으로 구술하는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라.
 - 다.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M' 프로그램 제484회의 동영상 원본에서, 별지 2 목록 제1 내지 5항 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 J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다시 보기 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M' 프로그램 제484회의 동영상 원본에서 별지 2 목록 제1 내지 5항 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되도록 하라.
 - 라.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J의 인터넷 홈페이지 'M' 관련 시청자 게시판에 통상적인 게시글과 동일한 글자체로 작성된 별지 1 해명광고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광고를 3년 동안 게재하라.
 - 마. 위 피고들이 위 나 내지 라항 기재 각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위 각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라 한다)는,
 - 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0.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M' 프로그램 제484회의 동영상 원본에서, 별지 2 목록 제1 내지 5항 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가 재생하기 하거나 다운로드받은 M' 프로그램 제484회의 동영상 원본에서 별지 2 목록 제1 내지 5항 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되도록 하라.
 - 다.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콘텐츠공지 항목에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해명광고를, 다른 공지 글과 같은 글자 크기로 3년 동안 게재하라.
 - 라. 위 피고가 위 나, 다항의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이행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위 각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2020. 2. 14. 서울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 남성들에 관한 제도 등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인 시위(이하 '이 사건 1인 시위'라 한다)를 하였던 자이다.
- 2) 피고 J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M'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회사이고, 피고 K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오디오물 제작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 3)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1인 시위를 하던 무렵 위 'M' 프로그램의 기획자로서, 피고 C, D은 위 프로그램의 연출자로서, 피고 E은 위 프로그램의 메인작가로서, 피고 F, H은 위 프로그램의 PD로서, 피고 G, I은 위 프로그램의 AD(Assistant Director, 일반적으로 PD가 되기 전에 PD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로서 각각 위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 관련 업무에 참여한 사람들이다(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제작진들'이라 하고, 피고 제작진들 및 피고 J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고 J 측'이라 한다)
- 4) 피고 L는 'N'라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 J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회사들과 콘텐츠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제작사들로부터 공급받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방송 등

- 1) 피고 J는 2020. 2. 21. 위 피고가 운영하는 방송 채널을 통하여 피고 제작진들이 제작한 'M' 프로그램 제484회(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방송에는 원고와 관련하여 별지 3 대본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2) 피고 L는 피고 J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 사건 방송이 진행되었던 2020. 2. 21. 이후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피고가 운영하는 N에서 이 사건 방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L에 대한 각 청구

피고 L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제2항 등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위 피고가 운영하는 OTT 서비스인 N의 이용자들이 N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 L는 원고에게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방송 영상 원본 중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나아가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이 사건 방송 영상 중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부분을 삭제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별지 1 해명광고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광고 글을 위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가 있고, ④ 위 피고가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위 각 의무(삭제 및 해명광고 글 게시)를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J 측 및 피고 K

- 1) 피고 제작진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원고의 개인정보인 주소의 수집·이용·제공 등 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위 피고 J 측 또는 피고 K가 언론 보도를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내지 제8장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아가 피고 제작진들 내부에서 취재 목적으로 원고의 주소를 공유하는 등 행위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 3호가 금지하는 ‘누설’, ‘제공’, ‘유출’ 등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J 측 및 피고 K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 2) 피고 J 측은 가명 및 모자이크 처리 등 방법으로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성명이나 초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에 위 방송의 대상이 원고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애당초 이 사건 방송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이나 명예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 3) 원고가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중 위법하다고 지적하는 상당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 자체를 저해할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 4) 나아가 이 사건 방송에서 다른 원고에 관한 내용들은 피고 제작진 측이 원고와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피고 J 측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다. 나아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개인적 배경 등에 관하여 다른 것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남성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원고와 같은 사람들이 점차 여성 혐오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사회에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만연한 젠더갈등과 여성혐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균형 있는 시각 조성에 이바지하며, 이로써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방송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 L

이 사건 방송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설령 그러한 내용이 위 방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J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애당초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L가 피고 J 측으로부터 공급받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공급받게 된 방송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 J 측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 및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가) 피고 H은 원고가 이 사건 1인 시위를 하였던 날인 2020. 2. 14. 원고에게 스스로를 'M'의 PD라고 소개하면서 'M'에 출연할 의사가 없는지 물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일단 원고로부터 연락처를 얻은 후 원고와 헤어졌고, 원고에게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원고가 2020. 2. 15. 피고 H에게 'M'에 출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피고 H은 원고에게 '원고가 생각하는 법과 제도에서의 남성의 권리 침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모자이크 등을 통해 신원 보호를 해줄 수 있다. 원고가 사는 곳으로 방문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H의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다) 피고 H은 원고가 위 나)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날(2020. 2. 16.)에 원고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물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H에게 원고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 라) 피고 H, I은 2020. 2. 16. 전주시에 있던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위 피고들이 위 인터뷰를 마친 후 원고의 집을 떠날 무렵에 비로소 원고의 집에 돌아온 원고의 모친과 잠시 마주쳤다.
- 마) 원고는 2020. 2. 17. 원고가 이 사건 1인 시위를 하였던 현장 인근에서 추가 인터뷰를 하자는 피고 H, I의 제안에 따라 서울로 상경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 F, G은 피고 H, I으로부터 원고의 주소를 제공받은 후 전주에 있는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의 모친과 따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²⁾
- 바) 원고가 피고 H, I이 피고 F, G에게 원고의 주소를 제공하는 것이나 피고 F, G이 원고가 없는 동안 원고의 집에 찾아가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었다.
- 사) 피고 F, G은 서울에서 전주에 있는 원고의 집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도로 원고 모친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등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피고 F 또는 피고 G은 위와 같이 원고의 모친을 찾아가 원고의 모친을 처음 만났을 때 원고의 모친에게 ‘아니 어제 왔던 방송국 팀 맞는데 아드님이랑 어제 왔던 피디랑은 얘기하고 있고 제가 어머니한테 뭐 좀 여쭙보려고’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 가) 위 1)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는 단지 피고 H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하여 원고를 직접 인터뷰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위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제공하였고, 피고 H은 이로써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소를 처리(수집)하였는데, 이후 피고 H, I은 피고 F, G으로 하여금 원고가 피고 H, I과 서울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주소로 찾아가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원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피고 F, G에게 이를 제공하였고, 피고 F, G 역시 피고 H, I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소를 제공한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 피고 H, I으로부터 원고의 주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나) 따라서 피고 H, I은 적어도 원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피고 F, G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인 주소를 제공함으로써 당시 시행되었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동조 제3호가 금지하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를

2) 피고 J 측은 피고 F, G이 피고 H, I으로부터 원고의 주소를 제공받아 원고의 모친과 따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을 자인하는 전제에서 피고 H, I이 피고 F, G에게 원고의 주소를 알려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피고 J 측 및 K의 2024. 4. 29. 자 준비서면 제2 내지 3면 참조). 나아가 위 올라 제9호중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모친과 인터뷰를 한 사람은 원고의 모친에게 ‘어제 왔던 방송국 팀 맞는데 아드님이랑 어제 왔던 피디랑은 얘기하고 있고’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적어도 위 인터뷰를 한 사람은 피고 제작진들 중 피고 H, I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질렀고, 피고 F, G이 피고 H, I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³⁾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위와 같이 피고 H, I, F, G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위 피고들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조항에도 위반된다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J 측은, 원고가 개인인 피고 H이 아닌 'M 제작팀'에게 원고의 주소를 제공한 것이어서 피고 H, I이 위 제작팀 내부 구성원인 피고 F, G에게 원고의 주소를 공유한 것이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M 제작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H이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타인인 피고 제작진들에게 임의로 원고의 주소를 공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 H에게 원고의 주소를 제공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한 범위는 '원고 스스로를 인터뷰하기 위한 것'에 국한될 뿐이며, 이와 달리 '원고가 부재 중일 때 원고의 모친을 찾아가 인터뷰할 수 있도록 다른 피고 제작진들에게 임의로 원고의 주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의 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J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그러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바로 언제나 그 정보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항상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침해행위자에게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면, 정보주체가 위자료로 전보하여야만 마땅하다고 볼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3)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항은 같은 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한하여 처벌한다. 그러나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참조), 설령 피고 F, G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1)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 F, G이 직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피고 H, I의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의 취지 참조).

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 H, I, F, G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 가)에서 본 사실 및 갑 제29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손해와는 별도로 피고 H 등이 저지른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기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J 측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기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피고 J 측 중 피고 H, I,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B, C, D, E, J가 피고 H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 B, C, D, E, J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 (1) 피고 H, I이 원고의 주소를 제공한 대상인 피고 F, G은 피고 H, I과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의 일원이었다. 피고 H, I이 같은 제작팀이었던 위 피고 F, G에게 원고의 주소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원고의 주소가 또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
- (2) 피고 F, G이 원고의 주소를 이용한 목적은 원고의 모친을 인터뷰하여 원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피고 H에게 원고의 주소의 처리 등에 관하여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원고가 피고 H에게 원고의 주소를 제공한 목적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 (3) 피고 H, I이 원고의 모친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F, G에게 원고의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피고 J 측이 위와 같은 인터뷰를 바탕으로 취득한 원고의 사생활 정보를 방송하여 대중에 공개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힐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 H, I이 원고의 모친을 찾아가 인터뷰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고 F, G에게 원고의 주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피고 J 측이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얻은 원고에 관한 사생활 정보를 방송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전보된다고 볼 수 있다.
- (4) 원고 역시 소장 등에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이 3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고 H 등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도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송에 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방송의 대상이 원고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문제가 되는 당해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5, 99호증의 각 기재, 음성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방송 초반에 헬멧과 고글을 쓴 원고가 이 사건 1인 시위를 하면서 발언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목소리는 음성 변조되지 않은 사실, ② 이어 이 사건 방송에는 원고가 피고 제작진들과 인터뷰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은 'P'로 가명처리되었고, 원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목소리는 음성 변조되지 않았고, 해당 인터뷰 장면이 나올 때 'S'이라는 자막이 제시되는 사실, ③ 이어 위 방송에는 모친 대역 배우가 원고의 모친이 피고 제작진들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는 위 재연 내용이 처음 등장할 때 모친 대역 배우를 'P와 단들이 살고 있는 노모'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에 결국 모친 대역 배우가 발언하는 내용이 결국 위 'S'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방송의 시청자는 위 방송의 대상이 이 사건 1인 시위를 벌인 사람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음성은 변조 처리 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송되었으므로, 원고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였을 때 이 사건 방송의 대상이 원고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가)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방송의 대상은 원고라고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원고의 이름이나 초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 J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한 사생활의 공개 대상인 사람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등 참조).

(2)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3, 36, 38, 51, 70호증의 각 기재, 음성,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에는 2. 가. 1) 나)에서 본 표의 ‘위법한 내용 부분의 특징(대본 기준)’란 기재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아래 ①, ②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는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 혹은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과 더불어 위법하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피고 J 측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J 측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진로 관련 부분 중 ‘대학 졸업 후 아들은 좀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 번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이미 마흔을 넘어선 그는 공무원 준비를 하며 40대를 노랑진에서 보냈다고 합니다.’는 부분은 원고가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와 달리 위와 같은 내용으로써 적시된 사실은 원고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일자리를 일절 찾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J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2004. 7. 20.부터 2005. 9. 16.경까지 매월 20일경에 T로부터 약 500,000원 내지 800,000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았고, 2019. 2. 12.경에는 불상의 사업주 또는 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⁴⁾(환경미화직, 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더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방송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원고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할만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 원고가 선을 몇 번 보았지만 결혼도 못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원고에게 복종하는 여자를 원한다는 등의 사실(결혼 등 관련 부분 참조), ㉡ 원고가 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텔레비전만 보면 성적인 것을 본다는 사실(성적인 영상 시청 등 관련 부분 참조), ㉢ 원고가 임용고시를 세 번 치렀지만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진로 관련 부분 참조)은 모두 그 허위 여부를 떠나 원고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충분하다[다만, 갑 제31 내지 35, 3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4) 원고의 담당업무는 환경미화 관련 업무였고, 근로기간은 2018. 8. 21.부터 1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2호증 참조).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으로써 적시된 위 ㉠, ㉡ 기재 각 사실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 ㉡ 기재 각 사실들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J 측은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위 을가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J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J 측의 위법성 조각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에서 본 진로 관련 부분, 결혼 등 관련 부분, 성적인 영상 시청 등 관련 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합하여 '위법성 인정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실에 해당하고, 위 (1) (나)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 J 측이 위와 같은 사실을 방송하여 공개하려면 그에 대하여 적어도 원고로부터 묵시적인 승낙이라도 받았어야만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H 간의 의사소통 내용(갑 제29호증 참조)이나 피고 제작진들이 작성한 원고의 인터뷰 프리뷰 내용(을가 제8호증 참조)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J 측에 원고에 관한 방송을 허락한 범위는 남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그 밖에 원고가 피고 제작진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직접 알려준 원고의 정보에 관한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피고 제작진들에게 원고의 모친과 인터뷰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직접 피고 제작진들에게 언급한 적이 없는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들까지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J 측은, 여성혐오를 드러내는 남성들의 주장 내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람들이 여성혐오를 갖게 된 배경을 조사하여 보도함으로써 '여성혐오 또는 젠더갈등' 문제가 촉발되는 배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 인정 부분까지 포함하여 방송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1인 시위를 하거나 피고들과 인터뷰하면서 발언한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는 남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여성혐오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 밖에 젠더갈등을 촉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방송할 것을 승낙하지도 않은 원고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여성혐오 사상을 가진 사람의 배경 이해' 또는 '여성혐오 내지 젠더갈등 관련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이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1인 시위를 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이 보도된 바 있기는 하나 원고가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두고 공중이 알아야 할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위법성 인정 부분을 방송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지도 도무지 상정해보기가 어렵다.

- ③ 더구나 피고 J 측은 원고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원고 몰래 원고의 모친을 찾아가 원고에 관한 사생활 정보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를 '공무원 시험에 계속하여 낙방하고,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혼도 하지 못하고 방에서 성적인 것을 시칭하는 사람'으로 묘사한 후 '방향을 잃은 분노와 혐오는 모두를 다치게 할 뿐입니다.'라는 진행자의 멘트로 이 사건 방송을 마무리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 J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개인적 배경을 조사·보도하여야 할 다소 간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위법성 인정 부분을 방송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내지 공격에 해당할 뿐이다. 이에 위와 같은 방송으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의 인격적 가치가 위와 같은 방송으로 인하여 달성될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중대하다고 보기도 충분하다.

(3)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갑 제26, 39, 40호증의 각 기재, 음성 및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 또는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거나 원고의 사생활을 위법하게 공개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아래 방송 내용까지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어머니의 시름 관련 부분이나 취직 발언 등 관련 부분은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원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만한 내용이라거나, 그 밖에 원고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할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말미 부분은, ‘원고의 행위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대상인데,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사 인터뷰 장면이 나온 직후에 ‘그날의 6시간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그가 내야할 벌금에 비하면 너무 큼니다.’라는 진행자의 멘트가 나오도록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위 진행자의 멘트 중 ‘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나, 위 진행자의 멘트 직전에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 이상 위와 같은 부분이 ‘원고의 이 사건 1인 시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2020. 3. 13. 원고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보면, 설령 원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들은 원고의 이 사건 1인 시위로 인하여 초래된 사회적 비용에 관한 것으로 단지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방송의 전체 내용과 말미 부분 중 맨 마지막 진행자의 멘트 부분(‘방향을 잃은 분노와 혐오는 모두를 다치게 할 뿐입니다.’는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위 진행자 멘트 부분이 원고가 개인적 문제의 원인을 원고 자신이 아닌 여성과 장애인 탓으로 돌리고 여성과 장애인들을 혐오한 나머지 이 사건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멘트 부분이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멘트 부분이 바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인다(원고는 말미 부분의 방송 중 위 진행자 멘트가 나오는 가운데 “投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자신을 정당화 함.”이라는 자막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말미 부분에 위와 같은 자막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군가산점 제도 헌법재판 등 관련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원고가 임용고시에 낙방하게 된 원인을 군가산점에 관한 헌법재판을 신청한 여성들에 대하여 돌린다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직접 적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군가산점

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남성인지 여부는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J 측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J 측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게 된 경위, 위법성 인정 부분이 이 사건 방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방송으로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기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J 측은 공동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해명광고 방송, 삭제,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J 측에 대하여 별지 1 해명광고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광고를 방송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에 관한 사생활 정보는 가급적 적게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고, 피고 J 측이 이 사건 방송을 한지 3년 가량 경과한 현 시점에서 위 피고들이 방송한 원고의 사생활 정보들에 관한 해명방송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사건 방송으로써 훼손된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더구나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제작진들은 애당초 해명광고 방송을 하여야 할 주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원고의 피고 J 측에 대한 해명광고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J 측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원본 파일에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나아가 피고 J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이용자들이 다시보기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통하여 가지게 된 위 동영상 원본 파일에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그 인격권에 기하여 피고 J에 대하여 현재 피고 J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사건 방송 영상중 위법성 관련 부분을 삭제할 것을 구하는 것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J 측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유하거나 피고 J의 시청자들이 보유한 동영상 원본 파일 중 일부를 삭제하도록 하는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② 애당초 피고 J 측 전원이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피고 J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피고 J 측에 대하여

5) 원고는 피고 J 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삭제를 할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

구하는 바와 같은 삭제는 이 사건 방송으로써 훼손된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J 측에 대한 삭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이상과 같이 피고 J 측에 대한 해명광고 및 삭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 J 측이 해명광고 및 삭제 청구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 J 측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날 이후인 2020. 2. 2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날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K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H, I, F, G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피고 J 측이 한 이 사건 방송에 기하여 피고 J 측 뿐만 아니라 피고 K에 대하여도 300,000,000원의 손해배상, 별지 1 해명광고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광고문 게시, 동영상 원본 파일 중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의 삭제, 간접강제 등의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K가 '피고 J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는 영리 사기업이며 피고 J 관련 기업'이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 사건 소장 제3면 참조)이고, 피고 K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J 측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K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 L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L는 단지 콘텐츠공급계약에 기하여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 J가 공급한 이 사건 방송 동영상을 공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L가 이 사건 방송 동영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을 무렵 이 사건 방송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나 그밖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정황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 L와 같이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위와 같이 콘텐츠공급계약에 기하여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는 경우에 그 모든 콘텐츠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 L에게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서비스를 개시할 때 위와 같은 심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결국 갑 제66, 67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L가 이 사건 방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각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피고 J 측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J 측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K, L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83033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사안이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고 과거 허위로 판명된 내용을 타 매체 보도에 의존하여 사실확인 없이 전달한 경우에는 공익 목적이거나 진실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단계판매업체 25개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복수의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수감 중에도 또 다른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 방송사와 소속 PD들, 그리고 출연 기사는 2023년 4월 8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혼인 경위, 관련인의 자살, 부도어음을 통한 밀항 시도, 은닉재산 규모, 투자사업 사기 의혹 등을 다루었다. 방송은 일부 장면을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처리하며 원고가 극도로 파렴치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방송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하여 명예를 훼손했고,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과 방송금지,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방송 내용 중 혼인, 퇴역 군인 자살 원인 제공, 부도어음을 통한 밀항, 내연녀 옥바라지, 은닉재산 규모 등 일부 사실이 허위이고, 방송 내용의 공익성을 비롯해 진실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방송사와 PD들, 출연 기자에게 총 7천만 원(이 중 방송에 출연한 타 언론사 소속 기사는 방송사와 PD들과 공동하여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해당 방송의 일부 장면 삭제 및 재방송·온라인 공개 금지, 그리고 정정보도 게재를 명하였다. 나머지 주장 중 투자사업 사기, 회유 시도 등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판결 요지]

- 언론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언론사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기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언론매체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피고들이 방송에서 적시한 ‘집사 변호사와 혼인’, ‘퇴역군인 자살 원인 제공’, ‘부도어음을 통한 밀항 시도’, ‘내연녀 옥바라지’, ‘은닉재산 2조 6천억 원 규모’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해당 사안들이 원고의 사생활 깊숙한 영역이거나 과거 이미 허위로 판명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직접 확인 없이 인터뷰 진술에 의존하거나 다른 방송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으므로, 공익 목적이나 진실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투자사업 사기 의혹, 기자 회유 시도 등은 허위성 증명이 부족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방송사와 PD들이 공동하여 7천만 원, 이 중 3천만 원은 방송에 출연한 타 언론사 소속 기자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문제 장면의 방송·공개 금지와 삭제, 정정보도 게재를 명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3가합83033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C D E F G
변	론	2024. 7. 12.
판	결	2024. 9. 6.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 D, E, F, G은 공동하여 7,000만 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 D, E, F,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4. 8.부터 2024. 9.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H” 프로그램 제3회 중 별지1 부분을 C 채널·인터넷 웹사이트·OTT 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에게 인도·임대·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도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건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에 “H” 프로그램 제3회에서 별지1 부분을 삭제하고, C 채널의 “H” 프로그램 첫머리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I”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통상의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2를 표시하되,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2를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H” 프로그램 제3회를 방송하거나 디브이디·비디오테이프·시디 등으로 제작하여 제3자에게 인도·임대·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온라인상에 게재하거나 OTT 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반행위 1건당 1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판결 선고 다음날 즉시 “H” 프로그램 제3회의 방송을 중단하고, 온라인상에서 삭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주 5,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H” 프로그램 첫머리의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의 두 줄로 “J”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에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3 정정보도요구문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단계판매업체인 L 주식회사 등 소위 K 그룹 산하 25개 회사(이하 모두 합하여 ‘제1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약 1조 8,000억 원을 편취(이하 ‘제1선형 형사사건’이라고 한다)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2. 20. 선고 2006고합187 등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제1선행 형사사건으로 수감 중 변호사를 통하여 다단계판매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제2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약 1,137억 원을 편취(이하 '제2선행 형사사건'이라고 하고 제1선행 형사사건과 합하여 '선행 형사사건'이라고 한다)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고합126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23. 4. 8. 피고 회사 운영의 방송 채널을 통하여 피고 회사 소속의 PD인 피고 D, E, F, G(이하 피고 회사와 모두 합하여 '피고 회사 등'이라고 한다)이 연출한 "H" 프로그램 제3회(원고의 행적을 오랜 기간 취재한 다른 언론사 소속 기자인 피고 B이 일부 출연하였는바,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를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3, 갑2호증의 2, 갑9호증, 갑13호증, 을나10호증, 을나11호증, 을나12호증, 을나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방송이 적시한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①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상영·처분·공개를 금지하고, 위 프로그램의 방송을 중단하고, 위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회사는 별지3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가 선행 형사사건으로 수감 중 이른바 집사변호사와 혼인하였다.

나. 제1회사의 회원인 퇴역군인이 투자실패를 비판하여 자살한 것은 원고 때문이다.

다. 원고가 제1선행 형사사건으로 도피 중 제1회사의 회원 N에게 액면금 35억 원의 어음을 주면서 중국행 밀항선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부도어음인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 N이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원고가 붙잡혔다.

라. 원고가 구속된 2006년경 원고의 부인이 미국에 있었는데, 내연녀들이 원고의 옥바라지를 하였다.

마. 원고의 은닉재산 규모가 약 2조 6,000억 원대이다.

바. 원고는 회원들에게 매출액의 250%를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선행 형사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사. 원고는 제주도 개발, 강화도 개발, 석유시추 사업을 내세워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모두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아. 원고가 강화도 개발지구 내 토지를 줄 것을 제안하면서 취재를 멈춰달라고 피고 B을 회유하였다.

자. N은 제1회사의 최상위 회원으로서 다단계 구조에 따라 많은 돈을 벌었다.

3. 쟁점의 정리

갑3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의 1 내지 10, 갑8호증의 1 내지 27, 갑11호증의 1 내지 55, 갑14호증의 1 내지 3, 갑17호증의 1 내지 9, 갑18호증의 1 내지 5, 갑19호증의 1 내지 8, 갑21호증의 1 내지 5, 갑25호증의 1 내지 23, 갑32호증, 갑33호증, 갑34호증, 갑35호증의 1, 2, 을나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2의 가. 내지 자.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② 그중 피고 B의 발언 부분에는 2의 다. 내지 바. 및 아.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발언으로써 위 ②항 기재 사실을 적시하고, 피고 회사 등은 이 사건 방송으로써 위 ①항 기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각 적시사실 별로 허위성 여부를 살펴본 다음(다만 2의 자.항과 같은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판과 무관하여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 여부를 살펴본 후,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

가. 2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6.경 O와 혼인하였다가 2010. 10.경 이혼한 것 외에 혼인경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등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집사변호사를 통하여 제2회사를 운영한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서 원고의 혼인여부는 지엽말단적인 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집사변호사와의 혼인을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아래 다. 및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일 정도로 원고가 파렴치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감 중인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변호사와 혼인신고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매우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선행 형사사건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의 나.항에 관한 판단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P이 2006. 12. 12.에는 “Q” 프로그램을 통하여, 2007. 1. 29.에는 “R”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방송과 유사한 취지의 방송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3. 9. 위 ①항 기재 회사를 상대로 위 ①항 기재 각 방송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제1선형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퇴역군인의 자살과 원고의 무관함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가합4555 판결 참조)을 선고받은 사실, ③ 제1선형 민사사건이 확정됨에 따라 위 ①항 기재 회사는 위 ②항 기재 판결과 같은 취지의 정정보도를 한 사실, ④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위 ①항 기재 프로그램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된 퇴역군인의 유서에 원고에 관한 언급이 없음에도 그 내용을 각색하여 원고와 관련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등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제1선형 형사사건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 피해가 컸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서 지엽말단적인 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5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 등은 이 사건 방송 전에 위 ③항 기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 때문에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선형 형사사건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의 다.항에 관한 판단

갑8호증의 4 내지 27, 갑9호증, 갑10호증의 2, 갑13호증, 갑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는 제1선형 형사사건 무렵인 2005. 10.경 S에게 액면금 35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으나, S는 위 액면금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2) S가 제1선형 형사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이 사건 어음을 제출하였으나 위 어음을 이용한 원고의 밀항 시도에 관하여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원고는 제1선형 형사사건으로 도피 중 S 내지 N의 제보가 아니라 자동차에 부착된 위치추적 장치로 인하여 체포되었다.
- (4) 이 사건 프로그램은 S와 피고 B의 인터뷰(이하 ‘이 사건 인터뷰’라고 한다)에 기초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원고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S가 이 사건 인터뷰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5)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어음교부의 상대방을 “여성회원 T” 또는 “내연녀 T”라고 지칭하고 있는바, 자신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을 부도어음으로 기망하여 밀항을 시도할 정도로 원고가 파렴치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위 어음교부의 상대방을 왜곡하고 있다.

라. 2의 라.항에 관한 판단

갑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1선형 형사사건으로 수감 중인 2006. 8.경부터 2007. 2.경까지 사이에 배우자였던 O가 여러 차례 접견한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인터뷰에 기초하고 있는바, 위 다.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인터뷰상 S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위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들까지 이용할 정도로 원고가 파렴치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수의 내연녀들이 옥바라지를 하였다는 취지의 매우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2의 마.항에 관한 판단

갑9호증, 갑13호증, 갑23호증, 갑24호증, 을나5호증, 을나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 (1) 제1, 2회사와 같은 다단계판매업체의 영업구조상 선형 형사사건으로 원고가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위 사건의 피해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 (2) 제1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외로 밀반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가정보원이 작성하였고, 위 회사 및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제2선형 민사사건'이라고 하고, 제1선형 민사사건과 합하여 '선형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위 보고서의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임을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나60819 판결)을 선고 받았다.

바. 2의 바.항에 관한 판단

갑9호증, 갑13호증, 을가4호증, 을가9호증의 1, 2, 을가10호증, 을가11호증, 을나37호증, 을나3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적 맥락은 제1회사의 운영방법이 부당함을 지적하는 취지로서, 회원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홍보내용은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 (2) 원고와 제1회사는 실제 회원들을 상대로 보장 수당에 관하여 250%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였다.
- (3)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제1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상 수당 산정 공식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사. 2의 사.항에 관한 판단

갑9호증, 갑13호증, 을나10호증, 을나11호증, 을나12호증, 을나43호증, 을나44호증, 을나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투자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회원들에게 수익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수당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점, ② 원고 주장의 투자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 내지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2006. 3.경 산업자원부가 원고 주장의 투자 사업에 관하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2의 아.항에 관한 판단

을가4호증, 을가5호증, 을가6호증, 을가7호증, 을가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원고를 인터뷰하는 등 오랜 기간의 취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다수의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한 점, ② 위 피고는 그러한 기사 작성을 막으려는 원고 측의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언론사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만연히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언론매체에게 그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의 가. 내지 마.항 기재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선행 형사사건은 이 사건 방송 오래 전에 마무리되었고, 원고가 수감 중에 재기를 모색하면서 새로운 다단계판매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사건과 유사한 다단계판매를 빙자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만으로 2의 가. 내지 마.항 과 같은 선정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들이 언론인으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2) 2의 가. 및 라.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한 것임에도 피고 회사 등은 만연히 이 사건 인터뷰를 믿었을 뿐, 정작 당사자인 원고를 상대로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 (3) 2의 나.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제1선형 민사사건에서 허위사실임이 인정되었는바, 위 사건으로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와 동종 업계에 있는 피고 회사 등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4) 2의 다.항에 관하여 보건대, 4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문제가 제1선형 형사사건 당시 이미 드러났음에도 피고 B은 만연히 이 사건 인터뷰상 S의 진술을 믿은 것 외에는 별다른 취재를 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 등도 그러하다.
- (5) 2의 마.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4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 형사사건으로 원고가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위 사건의 피해액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점 및 제2선형 민사사건의 결론을 이 사건 방송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무렵 원고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선행 형사사건의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6. 구제수단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 609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2의 가. 내지 마.항 기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피고들은 위 허위사실과 같거나 유사한 취지의 사실적시에 관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선 4. 내지 5.항 기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위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정도, 이 사건 방송의 동기 및 경위, 피고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선행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 등은 공동하여 7,000만 원, 피고 B은 그중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일인 2023. 4.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회사는 주문 제2, 3항과 같은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위 ②항 중 정정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그들이 이 사건 방송의 중단·삭제·처분·공개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보도게재청구

2-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이 국정원의 기획에 따라 검찰이 언론에 흘린 것임을 원고가 시인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허위성 인정과 위법성 조각 부정은 타당하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인물이다. 피고들은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 및 소속 기자와 논설실장이다. 피고 언론사는 2018년 6월 21일자에 ‘국정원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이하 제1기사)하였고, 6월 23일자에는 ‘금품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고 이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보도(이하 제2기사)하였다. 원고는 이 두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총 2억 2천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공직자의 공직 수행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견제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이상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합111343)

2심 법원은 사건의 각 기사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면서도, 허위사실이 포함되었고 표현 또한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피고들이 이미 알려진 언론보도를 참고한 외에는 보도에 암시되거나 적시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게재와 총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였다. (2심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3심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제1기사와 제2기사에 적시된 사실에 대해, 피고들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사실의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제2기사에 대한 원심의 판단(1천만 원 지급)은

수급하였으나, 제1기사에 대한 판단은 위법성 조각에 관한 심리가 미진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는 취지로 환송하였다.

[판결 요지]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은 피고가 제2기사를 통해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이 국정원의 기획에 따라 검찰이 언론에 흘린 것임을 원고가 시인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의 허위성 인정과 위법성 조각 부정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그러나 대법원은 제1기사에 대해, 원고가 국정원의 정보 흘리기에 관여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보도 당시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와 노조 조사 결과 등에서도 의혹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사 전체 맥락상 원고의 반론도 일부 반영되어 있었고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또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근거해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으며 피고 패소 부분 중 제1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3심 판결문

사 건	2021다270654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W(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C D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W, C의 패소 부분 중 2018. 6. 21. 자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D의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W, C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D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경부터 2009. 7.경까지 J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W(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E'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 피고 D는 피고 회사 소속 논설실장이다.

나. 피고 회사는 E 홈페이지에 2018. 6. 21. "F"라는 제목으로 피고 C이 작성한 기사(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를, 2018. 6. 23. "G"라는 제목으로 피고 D가 작성한 기사(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제1기사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국정원이 K 의혹을 받는 H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A(원고)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부분이고, 제2기사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고, 이는 당시 M이 R이었던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원고)는 H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라는 부분이다.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제1기사는 ‘국가정보원이 H의 K 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하였음’을 암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였다. 제2기사는 ‘H의 K 의혹은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검찰이 언론에 흘린 것임을 원고가 시인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사실의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의 적시 여부, 사실의 허위 인정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아 오해의 가능성을 키웠고 사실의 진위확인을 위해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 2기사 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보도한 행위는 정당한 언론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의 적시 여부, 사실의 허위 인정 기준,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제1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제1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 (1) 원고는 J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H의 K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고, 그 사건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었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이다. 제1기사의 목적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당시 원고는 원고와 검찰이 H의 K 의혹 사건의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위 사건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되었고, 국가정보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
- (3) 이와 같이 제1기사가 보도될 당시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위와 같은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위를 재차 확인하지 않은 채 제1기사를 작성 및 보도하기는 하였지만,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S노조 N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피고들이 이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나아가 제1기사의 전체적인 내용도 당시 논란이 되던 원고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 및 원고의 소재파악에 대한 보도에 보다 더 주안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기사와는 달리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1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제1기사에서 보도하는 주요한 사실이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제1기사가 보도되었던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제1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제1기사의 보도에 관하여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회사, C 패소 부분 중 2018. 6. 21. 자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D의 상고와 피고 회사, C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D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10847

대구고등법원 2024. 5. 28. 선고 2023나16190

반론보도청구권의 반론 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사건 개요]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전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며, 피고 방송사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C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외벽의 균열, 방사능 오염수 누출, 내부 철근 부식 가능성, 삼중수소 누설량,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관리 부실 등을 보도하였다. 보도에는 '심각한 심부균열', '명백한 위법행위' 등의 표현과 함께 수중 촬영 영상, 조사보고서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이 중 다수 표현이 사실에 반하거나 과장되어 있어 원전의 안전성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회사의 신용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로 반론보도청구를 추가하였음)

1심 법원은 방송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나, 보도 내용들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에서 다루어진 쟁점들을 토대로, 원전을 운영하는 원고가 원전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하되, 언론중재법 제16조에 따른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방송 및 홈페이지 등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명하였다.

2심 판결 선고 후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요지]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다.

-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 1심 법원은 보도에서 제시된 균열, 누수, 검붉은 흔적, 누설량, 위법행위 여부 등 다섯 쟁점에 대해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하거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의 보도에 수중 촬영 영상, 조사보고서, 전문가 발언 등 취재를 기반으로 한 근거가 있었고, 일부 과장적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 2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 내용에 적시된 사실로 원고가 원전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원고가 처음부터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채 정정보도 청구권만 행사하다가 이 사건 보도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반론보도 청구를 하였다'며, 원고의 반론권 남용을 문제삼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고,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2심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여 방송 첫머리와 홈페이지 초기화면, 해당 영상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을 낭독·게재할 것을 명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2가합10847 정정보도 청구의 소
원	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2023. 7. 6.
판	결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B' 프로그램 가장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되,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화면 전체에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원자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원전'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 2)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인 주식회사 D 계열의 지역 방송사 중 하나로서 경상북도 포항 일대를 시청권역으로 하여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3)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고 한다)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나. 이 사건 원전 조사 경위

- 1) 2019. 4. 경 C 3호기 터빈갤러리 맨홀 내 고인물에서 최대 71.3만 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2019. 5. 경 WS-2 관측정에서 28,200 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자 2021년 초경부터 이 사건 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의 검출원인,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 및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 원안위는 2021. 2. 22. 경 지질·기계·방사선·토목 등 관련 학회 추천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E 민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과 원안위 비상임위원, 지역대표, 시민단체대표, 원자력계대표 총 7인으로 구성된 현안소통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 3) 조사단과 협의회는 2021. 3. 30.부터 ①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차수구조물 등의 건전성 및 감마핵종유출 여부, ② 터빈갤러리 내 높은 삼중수소 농도 검출 원인, ③ 1호기 터빈갤러리 바닥 침전물의 감마핵종 검출 원인 검토, ④ 부지내 관측정 측정값 추이분석 및 원인, ⑤ 외부환경으로 유출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여, 2021. 9. 10. 경 "C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2022. 5. 4. 경 "C원전(부지내) 삼중수소 2차 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라고 한다)"을 각 공개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

피고는 2022. 9. 20.과 2022. 9. 21. 방송된 'B' 프로그램에서 "F"라는 제목과 "G"라는 제목 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 표의 '보도내용'란 기재 각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용과 사회적 평가가 크게 실추되었고, 원고의 명예 역시 현저히 저하되었으므로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와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순번	보도내용	원고의 주장
제1 쟁점	C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외벽 바닥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됐는데,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매일매일 7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사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외벽 바닥은 2021. 12.경 이미 보수를 완료하여 현재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제2 쟁점	수조 한쪽에서 부식된 녹이 흘러나온 검붉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피고가 보도한 검붉은 흔적은 금속성 녹이 아니라 저장조 내의 유기물이 잔류된 이물질일 뿐이다.
제3 쟁점	원안위 조사단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콘크리트 일부분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심각한 심부 균열 현상이 발견되었다.	조사단이 확인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콘크리트 균열은 콘크리트 두께 1.2m 중 약 30cm 깊이의 미세균열로, 심각한 심부균열이 아니다.
제4 쟁점	지난 4월(2021. 4.) 조사단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C 1호기에서만 연간 40~5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새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40~50톤의 배출수치는 실제 이 사건 원전 1호기의 누설량을 나타낸 수치가 아니다.
제5 쟁점	C 1호기의 방사능 오염수 누설은 지정된 배출 시설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행위인데 관리 감독기관인 원안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사건 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되고 있지도 않으며, 설령 누설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배출시설을 거쳐 배출되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 2)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제1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제1 쟁점의 보도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1 쟁점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제1 쟁점의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단은 2021. 12.경 이 사건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Spent Fuel Bay) 남측 외부 슬래브의 1997년 보수 부위에서 누수를 확인하고, 누수가 발생한 부위에 아크릴로 만든 수조를 설치하여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그 양을 측정해 결과 하루 약 7L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사실, 원고는 2021. 12.경부터 2022. 1.경까지 누수부위에 대한 긴급 표면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실, 현재 추가 누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도 중에 화면으로 재생된 영상은 조사단이 2021. 12. 중순경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제1 쟁점의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① 조사단은 2021. 10.경 확인된 누수가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시공 당시 타설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 때문인 것으로 보았고, 그 균열이 콘크리트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22. 4.경 콘크리트 일부를 원통 모양으로 채취하여 검사하는 코어링¹⁾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내부균열이 30cm정도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 ② 조사단 단장 H은 2022. 4. 25. 조사단과 협의회의 합동회의 당시 ‘코어링을 한 부위에서 내부 균열이 발생한 것을 보면 다른 부위에도 내부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표면은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균열을 보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균열을 통해 누출수가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누수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 ③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하는 동안 화면으로 조사단이 2021. 12. 중순경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생하면서, 화면 하단에 “I”이라는 자막을 표시하였다. 나아가 제1쟁점의 보도내용 중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라는 부분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 마치 보도 당시에도 균열 부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화면 하단의 자막 표시와 함께 보면 화면에서 현재 재생되고 있는 영상 자체를 설명하는 화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 ④ 이 사건 보도 당시 피고는 그동안 원안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실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누수 영상을 최초 입수하였다면서 이를 재생하고 설명한 뒤 원안위가 내부 합의를 거쳐 위 영상을 발표 자료에 실지 않았다고 하며 보도를 마친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보도의 흐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 당시에도 이 사건 원전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였다기보다는 원안위의 발표 자료에 실리지 않은 실제 누수 영상을 통하여 원안위가 조사결과를 정확히 설명하고 보고함에 있어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제2 쟁점의 보도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2 쟁점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제2 쟁점의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단은 2021. 10.경 이 사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내부 벽체와 바닥에 도포된 에폭시라이너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2호기에 대한 수중촬영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자석이

1) 콘크리트 등 구조물의 내부 공극, 균열, 부식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 위치를 원통형태로 파낸 후 해당 원통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 이 사건 원전에서 코어링 검사는 전체 콘크리트 두께 1.2m 중 60cm 깊이로 진행되었다.

부착된 막대기가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바닥에 검붉은 흔적을 쓸며 이동하자 검붉은 흔적이 종이처럼 찢어지는 형상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5,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제2 쟁점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① 조사단이 2021. 10.경 진행한 이 사건 원전 2호기에 대한 수중촬영 영상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바닥에서 검붉은 흔적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 ② 조사단 단장 H은 2022. 4. 25. 조사단과 협의회와 합동회의 당시 ‘벽체 수직 균열로 인해 철근 강도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지 검토해본 결과 응력 상태가 60% 정도 되어서 이 자체의 구조적인 안정성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단지 균열 상태가 되면 녹슨 물이 수중촬영에서 봤다시피 부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고, 2022. 4. 30. 합동회의 당시에도 ‘SFB 벽체의 균열과 관련하여 강도상으로는 문제없지만 균열로 인해서 사실상 방사성이 있는 수분이 침투되면 부식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녹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 ③ 조사단과 협의회는 이 사건 조사보고에서 ‘벽체 내부 균열로 철근이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어 부식 조사 필요’라고 발표하였다.
- ④ 조사단과 협의회는 2022. 4. 30. 합동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이 사건 조사보고에 들어갈 내용 및 문구를 정하였는데, 조사단이 처음 ‘벽체 내부 균열로 철근 장기간 부식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위원들이 그와 같이 표현할 경우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고, ‘높다, 낮다’라는 표현이 정량적이지 않으므로 ‘부식 가능성이 있음’으로 수정하였다가, ‘부식 가능성 조사 필요’, ‘부식 조사 필요’로 순차적으로 문구를 수정하였다.
- ⑤ 피고는 제2 쟁점에 대한 적시 사실 보도에 연이어 외부 전문가 J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이는 ‘누설에 의해서 내부 부식, 즉 콘크리트의 강도를 유지하는 철근 부식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제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제3 쟁점의 보도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3 쟁점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제3 쟁점의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제3 쟁점의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① 조사단과 협의회는 이 사건 조사보고에서 ‘1호기 SFB 남측 외부 슬래브의 97년 보수

부위에서 누수 확인, 시공 당시 타설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로 판단되어 해당 부위의 코어링을 통해 심부 균열 확인'이라고 발표하여 명시적으로 심부 균열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 ② 조사단 단장 H은 2022. 4. 25. 및 2022. 4. 30. 조사단과 협의회의 합동회의 당시 '내부 균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전체 관통은 안하고 그것의 반 정도 슬래브 쪽을 코어링 조사하였다. 코어링을 한 결과 내부 균열이 30cm정도 깊게 가 있다. 표면 균열이 아니고 내부 균열로서, 균열에 깊이가 있고, (코어링을) 깊이 안하고 반만 했는데 그 반만 한 정도의 균열이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것은 그 옆에 하면 또 균열이 더 내려갔을 확률이 있어 심부 균열로 표현했다. 다른 부분에도 코어링을 하면 확률상으로 심부 균열이 있을 확률이 높다. 내부 균열이 하나만 코어링 했을 때도 발견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쪽에도 2-3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균열이 전체 밑에까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내부 균열을 우리가 보수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누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균열은 인정하나 미세균열일 뿐 심각한 심부균열이 아니라는 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에 대하여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제4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제4 쟁점의 보도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4 쟁점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제4 쟁점의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4 쟁점의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 ① 제4 쟁점 부분 보도 내용은 정확한 누설량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조사단의 비공개 회의록에 의할 때 방사능 오염수 누설량이 연간 40~50톤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함에 그쳤을 뿐이고 누설량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② 실제로 조사단과 협의회의 2022. 4. 30.자 합동회의 회의록에는 조사단 단장 H이 '심부균열이 가다가 CJ(Construction Joint) 옆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게 1개 있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2-3개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닥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어렵잡아 한 40톤인가 그 정도 나온다. 1년에 40톤, 50톤'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제5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제5 쟁점의 보도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5 쟁점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제5 쟁점의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제5 쟁점의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① 이 사건 원전 1호기의 방사능 오염수 누설 부분은 제1 쟁점의 적시 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피고는 제5 쟁점에 대한 적시 사실 보도에 연이어 국회의원 K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이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안전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를 위반해서 누설되었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다’라는 것으로 방사능 오염수 누설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조사단과 협의회의 이 사건 조사보고에는 2021년 이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하수를 통한 부지 외부로의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20. 3. 경 작성한 이 사건 원전 1호기 제26차 정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분석결과 사용후연료저장조(SFB) 또는 계통수(지하매설 배관)의 누설에 의한 자연환경으로의 누설이 확인되었고, 사용후폐진탱크(SRT) 에폭시라이너의 열화로 인하여 바닥배수 및 벽체를 통한 누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누설수가 부지 내 지하수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속한 부지계획의 수립/시행을 현장 시정조치 요구한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원고가 2020. 6. 23. 경 작성한 ‘C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집수정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의 하부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가 빗물 중 삼중수소 최대 수치보다 높은 결과가 확인되기도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1 내지 5 쟁점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23나16190 정정보도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1084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 이 법원에서 추가,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피고의 'B' 프로그램 가장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되, 낭독하는 동안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화면 전체에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B 초기화면(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위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의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각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B 부분의 2022. 9. 20.자 영상물(인터넷주소 2 생략)과 2022. 9. 21.자 영상물(인터넷주소 3 생략)의 각 앞에 위 가)항의 반론보도문 방송 내용을 각 삽입하라.
 -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가) 피고의 'B' 프로그램 가장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되,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화면 전체에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 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B 초기화면(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의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각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 다)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B 부문의 2022. 9. 20.자 영상물(인터넷주소 2 생략)과 2022. 9. 21.자 영상물(인터넷주소 3 생략)의 각 앞에 위 가)항의 정정보도문 방송 내용을 각 삽입하라.
- 2)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정정보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 반론보도 청구를 추가하면서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일부 변경하였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영상물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삽입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1)의 가)항 및 2)항 기재와 같다(다만,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이 있기 전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로서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제1심판결의 별지1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의 별지2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 표의 '보도내용'란 기재 각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용과 사회적 평가가 크게 실추되었고, 원고의 명예 역시 현저히 저하되었으므로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와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순번	보도내용	원고의 주장
제1쟁점	C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 외벽 바닥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됐는데,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매일매일 7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사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외벽 바닥은 2021. 12.경 이미 보수를 완료하여 현재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제2쟁점	수조 한쪽에서 부식된 녹이 흘러나온 검붉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피고가 보도한 검붉은 흔적은 금속성 녹이 아니라 저장조 내의 유기물이 잔류된 이물질일 뿐이다.
제3쟁점	원안위 조사단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콘크리트 일부분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심각한 심부균열 현상이 발견되었다.	조사단이 확인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콘크리트 균열은 콘크리트 두께 1.2m 중 약 30cm 깊이의 미세균열로, 심각한 심부균열이 아니다.
제4쟁점	지난 4월(2021. 4.) 조사단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C 1호기에서만 연간 40~5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새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40~50톤의 배출수치는 실제 이 사건 원전 1호기의 누설량을 나타낸 수치가 아니다.
제5쟁점	C 1호기의 방사능 오염수 누설은 지정된 배출 시설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행위인데 관리 감독기관인 원안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사건 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되고 있지도 않으며, 설령 누설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배출시설을 거쳐 배출되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2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각주 제외하고 아래에서 제1, 2행의 “내부균열이 30cm정도”를 “30cm 정도 깊이에서 내부균열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7, 8행의 “I”을 “X”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제1쟁점 관련).

『⑤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하는 동안 화면 하단에 “X”이라는 자막을 표시하였는데, 위 자막의 위치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시청자들이 위 자막 내용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는 2022. 9. 21.자 보도에서도 “원고는 입장문을 내고 방사능 오염수 용출 부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보수를 완료했고, 부지 외부로의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⑥ 피고가 입수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재생한 조사단이 2021. 12. 중순경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 내용,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원안위 발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위 영상을 소개하면서 원안위 발표보다 실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영상을 재생하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원전에서 현재까지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제2쟁점 관련).

『⑥ 원고는 수중촬영 영상에서 확인되는 검붉은 흔적은 유기물이 응집된 것인지 철근이 부식되어 발생한 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보고에는 ‘벽체 내부 균열로 철근이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어 부식조사가 필요합니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조사단 단장 H도 합동회의 당시 수중촬영 당시 확인된 검붉은 흔적이 녹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조사단도 처음에 ‘벽체 내부 균열로 철근 장기간 부식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중촬영 영상에서 확인된 검붉은 흔적이 단순히 유기물이 응집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대한 수중촬영 과정에서 검붉은 흔적이 발견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제2쟁점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대한 수중촬영 과정에서 검붉은 흔적도 발견되었으므로 내부 철근 부식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거나 철근 부식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 과정에서 검붉은 흔적과 관련하여 ‘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허위의 보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제3쟁점 관련).

『④ 원고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콘크리트 균열은 수조 구조물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특성상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심각한 심부균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콘크리트에서 확인된 균열은 표면균열이 아닌 내부균열인 점, 조사단 단장 H도 ‘표면균열이 아니고 내부균열이고, 다른 부분에도 심부균열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조사단은 위와 같은 균열로 인하여 철근의 부식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확인된 균열이 콘크리트의 특성상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콘크리트 균열은 콘크리트 두께 1.2m 중 약 30cm 정도 깊이에서 발생한 내부균열에 해당하고, 제3쟁점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콘크리트에 균열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심각한 심부균열’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균열의 정도 등에 관한 단순한 의견 내지 평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심각한 심부균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만을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제4쟁점 관련).

『③ C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차수구조물 등의 건전성 및 감마핵종 유출여부에 관한 부분에 ‘해당 누수 부분의 코어링을 통해 확인된 누수량을 기준으로 관통균열을 전제로 하여 공학적 계산시 콘크리트 균열에 의한 누수는 연 50톤 이상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연간 40~50톤의 누설량 추정치는 이 사건 원전 외부로 누설되는 방사능 오염수의 양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외벽에서의 누설 추정치일 뿐인데, 피고가 제4쟁점과 관련한 보도에서 ‘C 1호기’에서 연간 40~5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수가 이 사건 원전 외부로 유출된 양으로 인식되도록 허위의 보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시작하면서 ‘C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밖으로 냉각수가 새어 나온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4쟁점 보도 직전에 ‘원안위 조사단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콘크리트 일부분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심각한 심부균열 현상도 확인했습니다.’라고 보도하면서 뒤이어 제4쟁점 보도를 하였으며, 보도 마지막에도 ‘원고는 입장문을 내고 방사능 오염수 용출 부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보수를 완료했고, 부지 외부로의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제4쟁점 보도 내용은 C원전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연간 40~5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원전 외부로 누설되는 방사능 오염수의 양을 보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7행의 “을 제6, 7호증”을 “을 제6, 7호증, 을 제11호증의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제5쟁점 관련).

『④ C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지하수 관측정에서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된 원인에 대하여 ‘과거 1호기 폐수지저장탱크(SRT) 누설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과거 누설수가 폐수지저장탱크 하부의 지지벽체와 옹벽에 갇혀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 1호기 폐수지저장탱크 누설수를 함유한 지하수가 확산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제5쟁점 보도 중 ‘C 1호기의 방사능 오염수 누설’ 부분은 제4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원전 외부로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되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제5쟁점 보도 내용 중 ‘명백한 위법행위’, ‘관리감독 기관인 원안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 등의 표현은 위와 같은 누수 발생 사실을 전제로 방사능 오염수가 지정된 배출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될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이고,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되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원안위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피고의 의견 내지 평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만을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예비적 청구(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별지2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와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지만(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반론보도 청구권은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법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대법원 2009. 1. 15. 자 2008그193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사실적 주장인 제1 내지 5쟁점이 적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적시 사실은 이 사건 원전을 운영하는 원고가 원전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보도에 관한 피고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및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 대하여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

나)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반론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는 점(언론중재법 제27조 제3항)을 비롯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그 표현방식, 이 사건 보도 내용과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관련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 방법에 관하여는 주문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처음부터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채 정정보도 청구권만 행사하다가 이 사건 보도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반론보도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는 반론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

위와 같은 규정은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른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정정보도 청구는 그 성질상 반론보도 청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반론보도 청구를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접강제에 관한 판단

- 1) 피해자는 반론보도 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에 대하여 권리남용을 주장하면서 이를 닦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반론보도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론보도는 피고가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점과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판결에 따른 신속하면서도 실효적인 반론보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법원이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주문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간접강제신청에 따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보도 방법 등을 일부 추가,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가합36131

보도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원고의 입장에 대한 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더라도 핵심 설명이 누락되는 등 충분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하여야 한다

[사건 개요]

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2023년 8월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광고를 정부가 관리하는 D 채널에 게시하였다. 피고 방송사 A는 같은 해 8월 25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해당 광고를 언급하며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조회수 1,600만이 넘었고, 대다수는 초반 5~6초만 시청했다”라는 앵커 멘트를 하고, 같은 내용의 자막을 송출하였다. 원고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달라 원고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고, 그 핵심 부분이 시청자에게 허위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게시된 보도문은 접근성과 내용 면에서 충분한 정정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지상파 방송과 온라인 매체 등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하였다.

[판결 요지]

-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진실성 판단에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법원은 문제가 된 앵커 멘트와 자막이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 해당 ‘타임라인’ 자료는 실제로 ‘해당 구간을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으로, ‘5~6초만 시청한 시청자’의 비율과 동일하지 않으며, 평균 시청 지속시간도 3분 3초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며,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원고가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조회수를 과장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 원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사후적으로 게시한 보도문은 지상파 방송에 송출되지 않았고, 핵심 설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SNS나 관련 게시물의 차단·삭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정정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3가합36131 정정보도 청구의 소		
원	고	문화체육관광부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 가. B TV 'C' 프로그램에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진행자는 위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라.
 - 나. B뉴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C면과 정정대상보도 기사(인터넷주소 2 생략)의 하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 다. B뉴스 D 채널(인터넷주소 3 생략)에 위 가.항 기재 방송 영상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게재하고, 피고가 관리하는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등재된 정정대상보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열람차단 조치를 취하고 삭제하라.
 - 라. 계약에 의해 정정대상 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전송하고, 기 전송한 정정대상보도 기사의 상단에 게재되도록 하라.
2.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라는 종합 뉴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뉴스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지상파 텔레비전 등을 통해 방영하는 방송사이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 D 채널에 '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정책광고'라 한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25. 이 사건 뉴스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정책광고에 관하여 다루면서 진행자의 멘트를 통해, '지난달 정부가 D에 올린 F이란 제목의 영상이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조회수 1,6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중 대다수는 초반 5~6초만 시청한 걸로 나타났다'(이하 '이 사건 앵커 멘트'라 한다)고 보도하고, 방송 하단에 「G」이라는 자막을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피고 뉴스 홈페이지, 피고가 운영하는 D 채널 등에 게재하였으며,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및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아울러 위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보도의 중요 부분은 이 사건 정책광고의 시청지속시간이 아닌, 원고가 게시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정책광고의 제작·광고·홍보에 국가 예산이 집행된 점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관심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원고가 그 제작·홍보에 투입한 예산의 구체적 집행 내역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바, 원고가 문제 삼는 이 사건 앵커 멘트는 이 사건 보도의 중요부분이라 볼 수 없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이 사건 보도의 중요 부분인 원고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 국회의 질의 등 내용이 모두 진실에 합치하므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 2)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이후인 2023. 8. 29. 피고 뉴스 홈페이지, 피고 뉴스 D 채널, 피고와 계약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H, I, J) 뉴스 사이트의 이 사건 보도에 관한 기사 본문 하단 및 D 동영상 앞 부분에 아래와 같이 원고 청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내용을 게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동영상의 1,600만 조회수는 D 광고 기준에 따라 30초 이상 시청된 건만 집계된 조회수로, 평균 시청 지속시간은 3분 3초로 확인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초반 0~6초 사이 구간의 조회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광고비 집행에 따른 '조회수' 외에 30초 이하로 시청한 '노출수'의 양태까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으로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진실성 판단에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나. 사실의 적시 여부와 허위성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는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고, 위 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되는 등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 1) 이 사건 보도에서 뉴스 앵커는 ‘지난 달 정부가 D에 올린 F이란 제목의 영상이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1,6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초반 5~6초만 시청한 걸로 나타났는데요’라고 하였는데 위 앵커 멘트와 동시에 방송 하단에는 ‘G’이라는 자막이 표시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보도의 핵심 요지와 논점이 압축적으로 전달되는 앵커 멘트와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은 이 사건 정책광고는 대부분이 초반 5~6초만 보았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 2) 피고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전부터 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정책광고의 제작·광고·홍보에 국가의 예산이 집행된 점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관심이 존재하는 상황이 이 사건 보도에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도의 핵심내용은 이 사건 정책광고의 예산집행내역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를 이 사건 보도의 핵심내용으로 의도하였다면 원고가 언론 취재 대응 또는 국회에서의 답변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이 사건 정책광고에 관한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한 부분 중 어떠한 부분이 불충분한지에

-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보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 이 사건 보도는 이 사건 정책광고에 관한 동영상 타임라인을 통해 이 사건 정책광고의 조회 기록이 초반 5~6초 구간에 몰려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위 타임라인은 ‘해당 부분만을 시청한 시청자 비율’을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시청자가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을 수치화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는 D 고객센터의 타임라인에 관한 소개글(을 제3호증)을 통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분되는 두가지 개념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또한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 정책광고의 타임라인(2024. 1. 18.자 준비서면 11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책광고의 초반 5~6초 구간 뿐 아니라 중간이나 후반 구간에 조회수가 몰려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정책광고의 실제 평균 시청 지속시간은 5~6초가 아닌 3분 3초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도는 “대다수는(이 사건 정책광고의) 초반 5~6초‘만’ 시청한 걸로 나타났다”고 단정하여 보도하였다.
 - 4) 이 사건 보도는 이 사건 정책광고가 50일만에 1,6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여 다른 대한민국 정부 채널이 올린 영상들의 조회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정책광고의 타임라인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이 사건 정책광고의 초반 5~6초 구간에 조회 기록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곧바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에서는 10억 원 예산의 구체적 집행내역을 밝히려는 요구가 나왔다’고 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조회 기록에 관한 보도에 이어 바로 구체적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논란을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 정책광고 조회수의 과장에 원고가 관여하였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의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은 이 사건 정책광고의 시청지속시간을 이 사건 보도의 핵심내용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 5) 이 사건 정책광고의 실제 평균 시청 지속시간은 3분 3초임에도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정책광고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정책광고는 초반 5~6초만 본 시청자들이 대다수여서 조회수가 허위과장되었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이 사건 정책광고의 시청자들이 초반 5~6초만 시청하였다는 핵심근거인 타임라인 자료는 그 전제부터 진실과 합치하지 않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의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해 원고의 사회적 명예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는 피고의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 주장 보도문을 사후적으로 검색해야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뉴스 기사 본문의 하단에만 게시하였고,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매체 중 가장 중요한 매체인 지상파 ‘C’에서는 피고 주장 보도문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피고 주장 보도문의

구체적 내용도 ‘초반 0~6초 사이 구간의 조회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타임라인 기록이 시청자가 영상을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임에도 이러한 설명 없이 초반 조회 기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받게 하고, 피고가 관리하는 각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등재된 이 사건 보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열람차단 조치를 취하고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유의미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보도와 같은 비중의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라.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간접강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부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허위 사실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게재 방법, 추후 조치를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보도 중 허위부분의 내용과 분량,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보도 내지 게재하도록 하고, 아울러 피고가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2가합561208

언론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로 인정되고, 취재가 다른 언론보도나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는 데 그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G 떡볶이'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 인터넷신문사와 소속 기자는 2022년 11월 17일 자 기사에서 원고가 모 언론 운영자가 설립한 회사이며, 대표이사가 모 언론 사이트 수뇌부 소속의 개발 담당이고, 유튜브 채널 'F'를 방송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해당 기사는 L 참가 관련 방송 중 원고 제품 홍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자사와 특정 정치 성향 언론을 연결지어 소비자층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와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모 언론 운영자가 원고를 설립', '대표이사가 모 언론 수뇌부 소속', '유튜브 채널 F 방송' 부분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해당 부분들은 일반 독자가 원고를 특정 진보 성향 언론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피고들이 관계자 확인 없이 타 언론 기사 및 검색에만 의존해 보도한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G 떡볶이'가 특정 언론매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법원은 정정보도 게재와 4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요지]

-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적 주장 여부는 사용된 어휘, 전체 맥락, 사회적 배경, 독자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진실성은 주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법원은 '모 언론 운영자가 원고를 설립', '대표이사가 모 언론 수뇌부 소속', '유튜브 채널 F 방송'이라는 표현들이 모두 허위사실임을 인정하였다. 피고들이 다른 언론보도와 검색을 통해 취재를 진행했으나, 원고 및 모 언론 관계자에 대한 직접 확인 없이 보도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내용들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보도는 L 참가 관련 방송에서 원고 제품 홍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맥락에서 작성되어, 특정 정치 성향 소비자층의 원고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컸다고도 언급하였다. 반면, 'G 떡볶이'가 특정 언론매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며, 해당 매체가 진보언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치적 평가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법원은 피고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게재와 4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2가합561208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C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판결 확정 후 7일 내에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초기화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별지3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게재하고, 이후에는 별지3 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이행완료일까지 1일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사건·사고 면에 제목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은 본문 활자로, 아래 이하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별지2를 게재하고, 이후에는 별지3 기사의 본문 하단에서 별지2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쟁점의 정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소속 기자인 피고 C 작성의 별지3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 회사는 별지2를 게재하고¹⁾,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²⁾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아래 내용 별로 사실의 적시성, 적시사실의 허위성, 피해자 및 위법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D언론 운영자가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E”는 D언론 사이트 수뇌부 소속이다.

다. 원고는 “F”를 방송하고 있다.

라. “G 떡볶이”는 진보언론 운영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2.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 4 35199 판결 등 참조).

3. 1의 가.항에 관한 판단

- 가. D언론 운영자와 원고 설립자의 동일성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의 적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원고의 설립자가 H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이 D언론을 발행하는 사실,

H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가 주식회사 J로부터 D언론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본문의 “E는 D언론 사이트 수뇌부 소속의 개발담당으로 D언론에는 운영 업체의 CEO로 알려졌다.”는 부분을 논거로 전체적 맥락상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기사 제목 및 최초 영상의 하단에서 “D언론 운영자가 설립한 회사”라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부분을 접한 독자로서는 원고 내지 H이 D언론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영역을 수행하는 자라고 인식하기보다는 D언론의 운영자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주된 취지는 소위 진보매체의 L 참가 관련 방송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G 떡볶이” 홍보가 부적절함을 지적함에 있고, 위 기사를 접한 독자는 D언론을 소위 진보매체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D언론과 원고의 관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소위 진보매체를 싫어하는 소비자를 상대로도 영업을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언론사의 기사 내지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사의 취재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 M이 위 기사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H 등 원고 관계자 및 I 등 D언론 관계자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그러한 취재만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1의 나.항에 관한 판단

가. H이 E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H의 D언론 인터넷 웹사이트 수뇌부 소속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의 적시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3의 나.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D언론 수뇌부에 H이 속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3의 다.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3의 라.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1의 다.항에 관한 판단

- 가. 원고가 “F”의 방송주체인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의 적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의 방송주체가 주식회사 J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은 방송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고, 전체적 맥락상 H 등 원고의 관계자가 위 방송에 출연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해당 부분 직전에 원고와 H에 관한 설시가 있는 점 및 “방송하고 있다.”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용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부분을 접한 독자로서는 원고 내지 H을 위 방송의 출연자라는 의미로 인식하기보다는 위 방송의 주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이 사건 기사에 주된 취지는 소위 진보매체의 L 참가 관련 방송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G 떡볶이” 홍보가 부적절함을 지적함에 있고, 위 기사를 접한 독자는 “F”를 소위 진보 방송프로그램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 프로그램과 원고의 관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소위 진보 방송프로그램을 싫어하는 소비자를 상대로도 영업을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3의 라.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마.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1의 라.항에 관한 판단

- 원고의 “G 떡볶이”가 특정 언론매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매체가 소위 진보언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제품이 특정 언론매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가. “진보”의 사전적 의미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보수”에 대칭하는 의미이다.
- 나. 정치적 측면에서 진보적 또는 보수적인지의 문제는 개념의 속성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가치관에 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있을 수 없다.
- 다.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사가 언급한 언론매체가 진보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7. 결론

이 사건 기사 중 1의 가. 내지 다.항에 관하여 정정보도는 주문 제1항과 같이 함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 위 기사 작성 및 보도의 경위, 허위사실의 비중, 원고의 피해 및 피고들의 취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기사삭제청구

3-1.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나2018728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 등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한국 지사(이하 원고 회사) 및 대표를 맡고 있는 중국인(이하 원고 대표)이고, 피고들은 언론사 한 곳 및 유튜브 채널 세 곳이다. 피고들은 원고 대표가 의도적으로 모 도지사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중 행보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내에서 중국을 위한 간첩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 이 대표가 여성성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보도를 하거나 영상을 내보냈다. 원고들은 이에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 대표의 간첩활동 및 원고 대표가 여성성을 이용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해, 단정적 표현은 없고 타인의 표현을 인용하거나 우회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으로, 피고들의 표현이 의견 표명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가합535691 판결문은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22쪽에 전문 수록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일부 기사와 영상에서 원고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암시되어 있음을 인정하여 총 1,9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일부 보도 내지는 영상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하였으며, 원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

[판결 요지]

-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 2심 법원은, 먼저 중국인인 원고 대표가 특정 광역단체장 및 시장과 “개인적으로 내밀한 친분을 맺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원고가 “모 사업의 배후”라는 취지의 기사에 대해 기사 전체가 의혹 제기과 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부 문구는 원고 대표가 특정 정치인과 내밀한 친분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모 사업의 배후라는 점을 사실상 전제·암시하는 표현으로 보았다. 해당 부분은 직접적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사실 암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문구의 부분 삭제를 명하고, 원고 대표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여 해당 기사를 작성한 피고들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 다음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영상에 대해서는, 비교 사례를 열거하며 “배후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대표를 모 사업의 배후로 단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상의 구성과 발언이 수사적 맥락에 비추어 의견·논평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또 다른 언론사와 소속 기자의 기사들에 대해서는, 기사 구성과 문장 배치를 종합하면 원고 대표가 외국 정당 또는 그에 연계된 세력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를 강하게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중대한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의 암시적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문구의 부분 삭제와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한편, 원고 회사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표현들로 회사 자체의 사회적 평가가 독립하여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대표 개인에 관한 명예훼손과 곧바로 동일시하기도 어려우므로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다.

2심 판결문

사	건	2023나201872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중화인민공화국인 B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D F 주식회사 L 주식회사 H I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가합53569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L, 주식회사 H, I에 대한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7,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L는 5,000,000원, 피고 H, I은 공동하여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22. 4. 7.부터, 피고 D은 2022. 2. 17.부터, 피고 주식회사 L는 2022. 5. 13.부터, 피고 주식회사 H, I은 각 2022. 2. 17.부터 각 2024. 5. 3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피고 주식회사 C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기사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분을,
 - 피고 주식회사 H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각 기사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을 각 삭제하고,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H가 이를 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L, 주식회사 H, I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원고 B의 피고 F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L, 주식회사 H, I 사이에 각 생긴 소송 총비용은, 그중 70%를 원고 B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F, 주식회사 L는 각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H, I은 공동하여 1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기사를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F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튜브 채널 'K'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L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튜브 채널 'L'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각 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피고 주식회사 H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공동피고 E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중국 O의 온라인 매체인 'Z'의 한국지사이다.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인터넷 언론 'P'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P 소속 기자이다.

다. 피고 F은 'K'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라 한다)는 'L'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마.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는 'W'라는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I은 W 소속 기자이다.

바.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사 또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14 내지 19, 21, 22, 24, 25, 26, 38호증, 을사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사 또는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각 기사 또는 영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으므로, 피고 C, F, L, H는 위 각 기사 또는 영상을 민법 제764조에 따라 각 삭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 F, L, H를 상대로 위 각 기사 또는 영상의 삭제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C, D

피고 C, D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P 기사'라 한다)에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의혹 제기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 C, D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위 기사를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공을 위한 것인 점에서 그 위법성이 없다.

2) 피고 F

피고 F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영상(이하 '이 사건 F 영상'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피고 F에게는 이 사건 F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 L

피고 L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각 영상(이하 ‘이 사건 각 L 영상’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다.

피고 L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위 각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공을 위한 것인 점에서 그 위법성이 없다.

4) 피고 H, I

피고 H, I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각 W 기사’라 한다)에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의혹 제기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원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청구

가) 사실의 적시 여부

- (1) 원고 B는 이 사건 P 기사에 ㉡ ‘원고 B가 M 전 N도지사과 개인적이고 내밀한 친분을 맺고 이를 이용하여 N도지사의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 ㉢ ‘원고 B가 AA 전 AC시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 ㉣ ‘원고 B가 N도 AB 사업1(이하 ‘AB 사업’이라 한다)의 배후이다’라는 사실, ㉤ ‘원고 B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먼저 ㉡ 내지 ㉤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P 기사에는 ‘원고 B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N도의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거나 ‘원고 B가 2015년 AC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것이 당시 AA 전 시장의 친중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 B가 M, AA 등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평가도 나온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점, ② 원고 B가 2014년경 명예 N도지사로 위촉되고 2015년경 AC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것은 진실인 점, ③ 이 사건 P 기사에는 원고 B가 M 전 N도지사과 개인적이고 내밀한 친분을 맺고 있다거나 원고 B가 AA 전 AC시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개인적 관계’에

1) AD시, AE군 등에 있는 ‘AF 북한관광단지’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문화와 IT기술이 접목된 관광단지의 개발을 추진하였던 사업을 일컫는다(갑 제38호증의 1).

있는지 여부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표현 내용이 증거로 충분히 증명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P 기사에 원고 B가 AB 사업의 배후라는 표현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피고 C, D의 주관적 의견 내지 평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㉔ ‘원고 B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P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원고 B가 의도적으로 M 도지사에게 접근해 N도의 각종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중국공산당이 중국 여성을 이용해서 (중략) 갖가지 방법으로 로비를 하는 것’, ‘M N도지사 외에도 중국의 스파이 짓에 놀아난 지자체 단체장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후략)’, ‘국내에서도 중국 스파이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후략)’

이러한 사실에 위 기사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및 그 내용 상호간의 논리를 연결하여 종합해 보면, 위 기사는 원고 B가 M 전 N도지사과 친분이 있고, 중국공산당이 여성을 이용한 로비 또는 스파이 활동을 하며, M 전 지사가 (중국 여성인 원고 B의) 스파이짓에 놀아났다는 내용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여성성 등을 이용해 모종의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또한 원고 B가 외국 언론사인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긴 하나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신분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에서 공적인물에 관한 이론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에는 ‘원고 B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 사실’이라 한다) 이 암시에 의해 적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1)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로비스트나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전혀 없다.
- (2) ‘간첩(間諜)’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P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위 기사에 사용된 ‘스파이’라는 표현은 원고 B가 위 간첩의 사전적 의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사용된 것이고, 원고 B의 정치적 성향 등을

강조하기 위한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피고 C, D은 원고 B가 대표로 있는 언론사의 지위, 그간의 활동 내역만을 보고 원고 B를 ‘스파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원고 B가 스파이 또는 간첩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D은 이 사건 P 기사를 보도하기 직전 유튜브를 통해 원고 B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별다른 절차 없이 위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 (4)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 2.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 D이 이 사건 P 기사를 게시하여,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이 파견한 간첩이 아니고, 중국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국내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2022고정391,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3노1152호로 항소심 계속 중).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명예훼손 여부)

- (1)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P 기사에 이 사건 적시 사실과 같은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적시 사실은 원고 B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②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바, 이 사건 적시 사실은 원고에 대한 직업적 평가 및 향후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P 기사의 보도를 통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따라서 이 사건 P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 B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 C, D은 별도의 사실 확인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사 및 기자로서의 취재 및 보도방법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 (1)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 D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로비스트나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 D은 이 사건 P 기사의 작성 전에 원고들이나 다른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적시 사실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C, D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P 기사의 내용 및 표현의 방식, 허위성의 정도, 사안의 파급력, 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P 기사의 보도가 원고 B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위 원고의 손해의 정도, 이 사건 P 기사가 게시된 언론사의 사회적 위상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 B에게 공동으로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피고 C는 2022. 4. 7., 피고 D은 2022. 2.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삭제 등 청구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중 위 명예훼손적 표현 부분의 보도를 통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원고 B의 명예 또는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C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기사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고(위 원고는 위 기사 전체의 삭제를 구하나, 위에서 본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문제되는 사실 적시 부분의 내용과 비중, 위 피고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기사의 내용 중 허위사실 적시와 직접 관계되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분만의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에게 위 기한 다음 날부터 위 삭제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B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F 영상에 ㉞ ‘원고 B가 M 전 N도지사과 개인적이고 내밀한 친분을 맺고 이를

이용하여 N도지사의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 ㉔ '원고 B가 AB 사업의 배후이다'라는 사실, ㉕ '원고 B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F 영상에서는 '미심쩍은 한중협력사업의 배후는 O가 아니겠는가', 'M 전 N도지사와 관계가 있는지 아무튼 원고 B가 N도 명예도지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사례와 같이 이런 미녀가 전국 각지를 휩쓸고 다니더라 하는 사례를 이야기했다', '얼마나 깊이 우리 정치권에 중국의 공작세력들이 침투해 있기에' 등과 같은 내용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마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가 N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되고, M 전 N도지사가 AB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진실인 점, ② 피고 F은 O가 AB 사업의 배후라고 적시하였을 뿐, 원고 B를 AB 사업의 배후라고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 B와 M이 '친밀한 관계', '개인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표현 내용이 증거로 증명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영상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 F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스파이나 공작 세력이 침투할 수 있는데, 원고 B 역시 그러한 세력일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일이라는 의혹 제기의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 B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은 점, ⑤ 원고들이 피고 F을 위 영상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고 F은 2022. 11.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울산지방법검찰청 2022년 형제15787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언은 피고 F의 주관적 의견 내지 평가라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F 영상에 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이 암시에 의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청구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원고 B는 이 사건 각 L 영상에 ㉔ '원고 B가 AB 사업의 배후이다'라는 사실, ㉕ '원고 B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㉔ '원고 B가 AB 사업의 배후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L 영상 중 [별지1]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영상에는 '중국 여자와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AB 사업을 접은 게 아닌가', '원고 B가 M 전 N도지사와 무슨 관계기에?' 등과 같은 발언이 있기는 하다(이 사건 각 L 영상 중 [별지1]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영상에는 위 ㉔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발언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은 ① 그 문언상으로도 추측성 발언에 불과한 점, ② 위 발언 부분은 그 표현 내용이 증거로 증명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L의 주관적 의견 내지 평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 (3) 다음으로 ㉔ ‘원고 B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L 영상 중 [별지1]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발언이 있다(이 사건 각 L 영상 중 [별지1]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영상에는 위 ㉔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발언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B는 제가 볼 때는 간첩이다. 이렇게 봐도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딱 간첩 같은’

이러한 사실에 ① 위 발언에서는 ‘간첩이다’, ‘딱 간첩 같은’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② ‘미국에서도 성관계 맺고 정보 빼내고 이런 것들이 비밀비재하다’는 등 전후의 설명과 위 영상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에서 피고 L는 원고 B를 지칭하면서 사전적 의미의 ‘간첩’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단순히 원고 B의 정치적 성향 등을 수사적으로 과장하기 위한 표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상에서 피고 L는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영상에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1)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간첩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전혀 없다.
- (2) 피고 L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명예훼손 여부)

- (1) 이 사건 각 L 영상 중 [별지1]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영상에는 이 사건 적시 사실과 같은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 B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위 영상에는 ‘일처다부제’, ‘꽃뱀 엄마’, ‘더불어 동서들’이라는 모멸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 (2) 피고 L는 [별지1]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영상의 출연자인 AG가 위 영상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 L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L 영상 중 [별지1]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영상의 발언이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뿐, 같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영상에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가 주장하는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지1] 목록 제3항 나항 기재 영상의 발언에 관한 것으로, 같은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영상에 포함된 발언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 L의 민사상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 (3) 피고 L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이 포함된 [별지1]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영상을 게시하였고, 이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간첩 내지는 로비스트나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 L는 위 영상 게시 전에 원고들이나 다른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적시 사실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없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L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적시 사실의 내용 및 표현의 방식, 허위성의 정도, 사안의 파급력, 위 피고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위 영상 게시가 원고 B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위 원고의 손해의 정도, 위 영상이 게시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규모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L가 원고 B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피고 L는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삭제 등 청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별지1]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영상의 형태로 피고 L의 원고 B에 대한 침해행위가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B의 명예 또는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²⁾ 따라서 위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삭제 등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 B의 피고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청구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원고 B는 이 사건 각 W 기사에 ㉗ ‘원고 B가 M 전 N도지사과 개인적이고 내밀한 친분을 맺고 이를 이용하여 N도지사의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 ㉘ ‘원고 B가 AB 사업의 배후이다’라는 사실, ㉙ ‘원고 B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㉗, 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W 기사 중에는 ‘원고 B가 “AH공항을 중국해 홍보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N도 차이나타운 건설 사업에는 원고 B의 입김이 배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① 원고 B가 M 전 N도지사과 친분이 있는지, 위 원고가 먼저 접근하였는지 여부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표현 내용이 증거로 충분히 증명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피고들은 ‘입김이 배어 있다’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그 영향이 부정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원고 B의 활동에 대한 가치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고 있고, 위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점, ③ 결국 위 내용 자체만으로는 원고 B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표현 내용이 증거로 증명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내용은 위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 내지 평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㉙ ‘원고 B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W 기사 중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중국공산당은 전통적으로 자국 여성을 이용해 세계 각국 정관계에 로비하고 있다’,
‘언론사 대표라는 명함을 들고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해 온 원고 B’, ‘원고 B는 학자 출신 언론인인가, 자국의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로비스트이자 스파이인가’

2) [별지1]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영상은 해당 주소에서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에 위 기재 부분에서는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해 온 B’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위 기재 중 마지막 문장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독자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으나, 원고 B가 실제로 ‘학자 출신 언론인’이 아니라 ‘로비스트이자 스파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 부분은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스파이 및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에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암시에 의해 적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1)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로비스트나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전혀 없다.
- (2) 피고 H, I은 이 사건 적시 사실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 I이 위 각 기사를 작성하면서 근거로 삼았다는 자료들은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로비스트나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 (3) 피고 I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3. 12. 2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 I이 이 사건 각 W 기사를 게시하여,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국내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스트 내지 스파이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2023고단1114,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21호로 항소심 계속 중).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각 W 기사에는 이 사건 적시 사실과 같은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 B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H, I은 이 사건 적시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각 W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가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로비스트나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 H, I은 이 사건 각 W 기사의 보도 전에 원고들이나 다른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언론사 및 기자로서의 취재 및 보도방법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적시 사실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H, I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적시 사실의 내용 및 표현의 방식, 허위성의 정도, 사안의 파급력, 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각 W 기사의 보도가 원고 B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위 원고의 손해의 정도, 위 각 기사가 게시된 언론사의 사회적 위상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B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피고 H, I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2.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삭제 등 청구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H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각 기사 중 위 명예훼손적 표현 부분의 보도를 통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원고 B의 명예 또는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H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재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각 기사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고(위 원고는 위 각 기사 전체의 삭제를 구하나, 위에서 본 각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문제되는 사실 적시 부분의 내용과 비중, 위 피고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기사의 내용 중 허위사실 적시와 직접 관계되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분만의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에게 위 기한 다음 날부터 위 삭제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마. 원고 회사의 각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 회사는 위 피고들이 게시한 이 사건 P 기사에 ㉞ ‘원고 회사가 N도 AB 사업의 배후에 있다’라는 사실, ㉟ ‘원고 회사가 스파이 행위 및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P 기사에는 ‘Z이 타국에서 자국 공산당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기사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을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비판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원고 회사가 실제로 중국공산당 관영 언론사인 O의 온라인 언론매체 한국지사인 점, ③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동일시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적시 사실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직접적으로 저하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원고 회사는 위 피고가 게시한 이 사건 F 영상에 ‘원고 회사가 N도 AB 사업의 배후에 있다’라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F 영상에서는 ‘한국의 인류문화유산을 밀어버리는 차이나타운, 배후는 O라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발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영상에서 피고 F은 ‘O’를 AB 사업의 배후가 아니냐는 취지의 표현이 있을 뿐, 원고 회사를 특정하여 그 사업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영상에서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적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B 사업 등의 배후 등에 관한 의견 내지 의혹의 제기만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F이 원고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L에 대한 청구

원고 회사는, 피고 L가 ‘원고 회사가 스파이 행위 및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L가 게시한 영상의 내용을 살펴봐도 원고 회사를 원고 B가 소속된 회사로 언급한 것 외에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적시 사실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직접적으로 저하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L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H, I에 대한 청구

원고 회사는 위 피고들이 게시한 이 사건 각 W 기사에 ‘원고 회사가 유명회사이다’라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W 기사 중 ‘원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재무 내역을 확인한 세무사가 전형적인 유명회사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누가 봐도 다른 목적을 지닌 회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사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관한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위 피고들은 위 기사에서 ‘세무사가 원고 회사를 유명회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여 세무사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 ‘유명회사’라는 표현은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의미로 통용되는데 어떤 회사가 ‘유명회사’인지 여부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표현 내용이 증거로 증명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표현은 위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 내지 평가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원고 B의 피고 C, D, L, H, I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F에 대한 청구,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피고 C, D, L, H, I에 대한 원고 B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B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며, 원고 B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피고 F에 대한 항소 및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4. 기타 참고 판결

4-1.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1390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도14521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에 관한 합리적 의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보도한 것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2018년 1~2월 사이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 부장판사와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은 피고인은, 제보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채 제보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해 피해자가 형사사건 재판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처럼 암시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방송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며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판장이 만났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형태로 방송하였고,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동기와 방송의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합418)

2심 법원도 제보의 허위성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고, 사실 확인 노력 없이 방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3심 대법원은 원심이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판결 요지]

- 표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러한 표현행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러한 표현행위는 명예훼손이 된다.
-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은 방송 등 언론매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인터넷 미디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 등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 등이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보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송에 포함시켰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재판장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처럼 암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는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3심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 인정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심이 위법성 조각을 부정한 결론을 유지하였다.

2심 판결문

사	건	2020노13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합418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0.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¹⁾

- 1) 피고인은 2018. 3. 2. 06:00경 개인 C 방송인 'B'(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인 E이 2018. 1.~2. 초 사이에 G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I 재판장인 부장판사(이하 '형사사건 재판장'이라 한다)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가정적인 판단과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2) 이 사건 제보가 있었고, L 변호사를 매개로 한 피해자와 형사사건 재판장의 학연 등 인적관계, 2017. 9.~10.경 K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이에 대한 L 변호사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취재협조문을 보내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위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이 이 사건 방송을 저장한 CD(증 제1호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의 증거목록에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CD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령 원심에서 위 CD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CD에 저장된 이 사건 방송과 동일한 영상이 포함된 USB 메모리 1개(증 제2호증)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3) 피고인은 K에 대한 탄핵과 관련 형사재판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 4)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보를 받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 5) 그럼에도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방송에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실시하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방송의 일부 내용만을 볼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제보 내용을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마치 제보받은 사실을 이 사건 방송의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추가 제보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① 이 사건 방송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고, ②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직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공개하였으며, ③ 나아가 제보 내용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거나 진실일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까지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실시하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형사사건 재판장과 M대 동문이라는 하나,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2018. 1.~2. 초 사이에 G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형사사건 재판장을 만났다는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하였고, 형사사건 재판장과 L도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② 형사사건 재판장과 L이 제출한 자신들의 각 카드사용내역 등을 살펴봐도 형사사건 재판장, L이 피해자와 2018. 1.~2. 초 사이에 G 인근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용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이 사건 제보 내용에 관한 사실은 그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단 한 명의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보 내용에 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허위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반드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가정적이거나 조건부로 또는 제3자의 제보 등을 인용하면서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을 부정하거나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언급한 이 사건 제보 내용은 'E인 피해자가 2018. 1.~2. 초 사이에 G 인근의 한식집에서 형사사건 재판장 등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를 포함하고 있어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거나 가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단순히 이 사건 제보를 받은 사실과 그 내용 자체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① 이 사건 제보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형사사건 재판장과의 관계 등을 부연 설명하거나 덧붙이고, ②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 '이 시점에 누가 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하는 등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개인적인 평가와 판단을 덧붙이면서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같은 의혹과 그 부적절성을

부각시켰으며, ③ 이 사건 제보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제보자의 신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진정한 사실이다’고 하면서 제보자와 그 제보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방송의 구성과 내용, 문맥, 표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해 C 방송의 시청자나 구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제보의 존재라기보다는 그 제보 내용과 같은 피해자와 형사사건 재판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로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충격적이며,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하면서 추가 제보를 요청하기는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제보를 받은 시점과 경위, 제보자의 신분이나 지위, 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② 제보자와 그 제보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도 이를 수증할 만한 소문자료나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나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탄핵하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G 대변인에게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 외에 이 사건 제보 내용에 언급된 형사사건 재판장이나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취재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④ 이 사건 방송을 C 채널에 공개하기 위한 촬영 영상의 편집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G 대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같은 만남이 없었다는 취지의 취재협조문에 대한 회신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편집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⑤ 이 사건 방송 이후에도 추가 제보를 받은 것이 없고, 이에 대한 후속 방송 등도 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그 제보 내용이 진실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과 그 전체적인 취지, 문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제보자 공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나 풍문 등으로 제보 내용과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암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제보의 존재를 밝히면서 가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추가 제보를 요청한 사정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제보 내용의 허위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의 ‘허위성의 인식’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실시하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을 녹화한 당일인 2018. 3. 1. 오전 11:37경 당시 G 대변인에게 아무런 근거자료도 첨부하지 않은 채 당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하라는 내용의 취재협조문을 보냈다가, 이미 방송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8. 3. 5. N 공보판사에게 위와 같이 취재협조문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방송에서 위와 같은 제보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G가 당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K에 대한 형사재판의 재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국내 유력 일간 신문사에서 무려 20년이 넘게 기자로 일하였다는 피고인이 신원을 밝힐 수조차 없는 제보자 1인의 아무런 근거 자료 없는 제보 및 피해자와 형사사건 재판장이 M대 동문이고, 모두 L이란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방송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제보 내용에 관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 내용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Q언론, R언론 등에서 20년 넘게 기자로 활동한 경력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못했거나 자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보도하지 않는다’, ‘제보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방송이 C 채널을 통한 개인 방송이지만, 피고인으로서 제보받은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의 필요성, 진실성에 대한 검증 등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언급한 이 사건 제보 내용은 ‘피해자와 형사사건 재판장이

2018. 1.~2. 초에 G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났다’는 것으로, 그 일시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막연한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시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 G 인근의 한식집에 대한 탐문에도 구체적인 장소나 만남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 등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원심에 제출한 진술서와 의견서(공판기록 75, 168쪽) 등에서는 제보자를 ‘S씨 성의 70대의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른신’으로 ‘젊은 시절 법조계에 몸담았던 공직자로 추정’하면서 제보자에게 과거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고 있어서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시점과 경위 등도 밝히지 않는 등 이 사건 제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추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들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이 사건 제보에 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하고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거나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오랜 기자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보자의 신원과 이 사건 제보에 관한 당시 상황 등만으로 그 제보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3) 한편 피고인이 2018. 3. 1. 11:37경 ‘ 대표 기자’ 명의로 당시 G 대변인에게 ‘피해자와 형사사건 재판장의 만남 여부, 만남에 동석한 제3자의 신원, 피해자와 형사사건 재판장의 평소 친분관계, 위 만남의 목적, 만남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서 같은 날 18:00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취재협조문’을 이메일로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G 대변인에게 취재협조문을 보낸 시점은 국경일로서 공휴일인 2018. 3. 1.이며, 취재협조문에 대한 회신 기한도 6시간 후인 같은 날 18:00까지로 매우 짧게 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보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G 대변인에게 이를 보낸 점, ② 피고인은 2018. 3. 1. 19:23경 G 대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같은 만남이 없었다는 내용의 취재협조문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 사건 방송을 C 채널에 공개하기 위한 촬영 영상의 편집, 수정 작업을 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2018. 3. 2. 06:00경 이 사건 방송을 C 채널을 통해 공개할 때까지 이를 반영하거나 수정하여 편집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제보 내용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막연하고, 이 사건 방송이 공개되기 전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같은 만남이 없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 인근의 한식당에 대한 탐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같은 만남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취재 활동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이를 공개하거나 보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G 대변인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서 비꼬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G 대변인으로부터 회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방송을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G 대변인에게 취재협조문을 보낸 사정 등만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이 N 공보판사에게 보낸 취재협조문은 이 사건 방송 후인 2018. 3. 5.에 이르러 비로소 보낸 것이어서 이 사건 제보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제보의 존재와 추가 제보를 요청하는 취지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반면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진실성에 대한 증명, 그것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할지라도 시정하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하고, ‘이 사건 제보 내용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고 하면서 G 대변인에게 취재협조문을 보낸 사실과 그 내용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과 그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제보자의 신원, 피해자 등이 만난 장소가 G 부근의 한식집이고 제3의 인물이 동석하였다고 하는 등 관련자들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인 점, 피고인의 C에서 ‘T’이라는 방송을 하는 중 K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 G 문건과 그 형사재판과의 관련성 발언, L 변호사의 형사사건 재판장과의 친분관계 발언, K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환기시키는 G 비서실장의 긴급브리핑 등이 있었던 상황 등에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제보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고, 그 제보 내용도 막연하여 그 자체로서 제보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거나 추단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보 내용에 관련자들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를 받을 당시의 상황 등도 이 사건 제보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보 내용과 연관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정들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은 C 채널 방송의 특성상 다양한 이념이나 성향, 시각과 관점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평가하고,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분석하여 논평하는 방식의 방송이 많이 있으며, 그 시청자나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방송을 하는 경향도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과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실시하고, K의 형사재판이 정치권력 등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공적 사안이고, 공적 인물인 E인 피해자와 형사사건 재판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국내 유력 일간 신문사에서 오랜 시간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비록 개인 C 방송이라고는 하나 그 구독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 점, ② 일반 시청자들은 위와 같은 경력과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고, 방송이 가지는 권위와 신뢰에 기하여 방송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여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방송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③ 피고인은 K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은 채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하였고, 이 사건 방송 당시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보자의 신빙성이 담보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어떤 의혹을 품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 방송으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자와 형사사건 재판장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 당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보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진실 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이 사건 제보 내용을 드러냈고,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국민의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 소명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제보에 대하여 가정적인 평가나 판단을 더하거나 추가 제보를 바란다고 언급하는 등 이 사건 제보 내용이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반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에 대한 탄핵과 그 형사재판과 연관지어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그 부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방송을 하였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하여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그 제보 내용이 진실임을 전제로 개인적인 평가와 판단을 덧붙이면서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근거 없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③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덧붙인 평가나 판단 내용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K의 형사재판과 피해자, 형사사건 재판장의 지위 등을 연관지어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E인 피해자가 형사사건 재판장과 부정한 결탁을 하거나 형사재판에 개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그 공정성, 도덕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오해를 가지게 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으로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 이후 N에 취재협조문을 팩스로 보낸 것 외에 이 사건 제보 내용에 관하여 추가적인 취재를 통하여 제보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실제 시청자나 구독자의 추가 제보가 있었다거나 제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이후 G 대변인의 회신

내용 등을 반영하거나 이 사건 제보 내용에 관한 후속 방송이나 보도를 하지 않았다.

- (4) 한편 사회적·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공직 인물의 공직 수행행위에 대하여는 일반 개인에 대한 사적 사안보다도 더 광범위한 문제 제기와 비판, 검증 등이 허용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건에 대하여는 여론형성 등을 위한 의견 표명이나 보도 등이 널리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공적인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 없이 소문이나 풍문에 기대어 단순히 의혹만을 제기하거나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제보 내용이 공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안과 관련된 것이지만,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 당시 C 계정을 통해 K의 탄핵과 그 형사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자신이 구상한 'B 행동지침'을 공표하는 등 그 시청자나 구독자로 하여금 이에 항의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다수 영상물을 공개해 왔고, 이 사건 방송도 이러한 의도와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공직 사회에 대하여 감시, 비판, 견제를 하거나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보도하였다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이해관계 등으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차이와 대립되는 의견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정황조차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제보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검증하려는 노력 없이 종래의 방송과 같은 시각과 관점에서 막연히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제보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²⁾

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상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행하여 판단한다.

수는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와 형사사건 재판장의 지위, 이 사건 방송 당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K에 대한 형사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던 시점인 점,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위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사안에 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이 사건 제보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② C 방송의 특성상 파급력과 전파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채널의 구독자수, 실제 이 사건 방송의 조회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방송이 C 채널에 공개될 때까지의 촬영, 편집, 공개 과정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및 공개 시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③ 이 사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이 사건 방송을 하거나, 그 방송 내용을 편집, 수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서 허위의 이 사건 제보 내용을 드러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 채널을 통한 이 사건 방송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C 채널을 통한 방송의 특성상 일반 방송 매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과 파급력이 있고, 언제든지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등 단순한 의혹 제기나 허위의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침해된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회복이 어렵게 될 우려가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장기간 기자 생활 등을 거치면서 언론인으로서 사실 보도의 중요성과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및 보도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의 확인이나 검증 등을 거치지도 않은 채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 제보 내용과 같이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형사사건 재판장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 도덕성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피고인의 C 방송의 구독자와 이 사건 방송의 조회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 후속보도나 정정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방송에서 공개된 이 사건 제보 내용은 E이라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직무수행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광범위한 문제 제기나 그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등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 당시 K의 탄핵과 형사재판 등과 관련하여 C 채널을 통한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나 구독자에게 이 사건 방송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상황과 사건 등을 분석, 평가하고 의견을 표현해 왔고, 이러한 일련의 방송 과정에서 이 사건 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소 형식적이지만 이 사건 방송에 앞서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진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방송 중에 실제 시청자나 구독자에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추가 제보를 요청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아래에서 보는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심 판결문

사	건	2020도14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2020. 10. 8. 선고 2020노139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 된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현된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내용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표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러한 표현행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러한 표현행위는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한편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표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하는 등의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표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표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525 판결 등 참조). 다만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은 방송 등 언론매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인터넷 미디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 등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 등이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피해자가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 김○○ 부장판사를 만나 함께 식사를 했다’는 등의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그 제보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형사사건 재판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처럼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종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사건 개요]

원고는 회원 수 약 70만 명의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이며, 해당 사이트는 정치·사회 이슈를 활발히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2013년 10월경, 국가정보원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 “종북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언론사는 이를 ‘○○(원고 운영 커뮤니티명) 감시, 국정원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하였다.

원고는 위 발언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이트와 본인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정신적 피해 발생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5가단5381624)

2심 법원은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다만, 재산상 손해 청구는 증명 부족으로 기각하였다.

3심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피기환송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 요지]

-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한다. 여기서 ‘사실’이라 함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를 의미하며, 의견·논평 등 가치판단이나 평가의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치적 표현과 같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 표명은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이 있더라도, 사용된 어휘, 발언의 전체 맥락,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법,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발언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막연하게 집단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심 법원은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아니하고, '종북 세력과 연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이트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운영자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는 증명 부족으로 기각하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3심 대법원은 문제가 된 발언이 "가능성이 있다"는 유보적·잠정적 표현으로 제시된 점, '종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점, 발언이 사이트 운영자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포괄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없고,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심 판결문

사 건	2019나3216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5가단538162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12.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22.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위자료 청구액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축하여 기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2022. 1. 28.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을 다시 100원으로 감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바꾸는 내용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여 제8회 변론기일에서 그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도 함께 감축하였다. 또한, 2022. 7. 4.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지연손해금을 기존 2012. 12. 17.부터 구하는 것에서 2013. 2. 1.부터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추가로 감축하였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한편,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취지를 2회에 걸쳐 변경하였음은 위에서 보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제1심공동피고 B은 2009. 2. 12. C에 임명되어 2013. 3. 21.까지 근무하였고, D은 2011. 4. 5.부터 2013. 4. 12.까지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F으로, G는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E H으로 각 근무하였다.
- 2) 원고는 'I'라는 이름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이 사건 사이트는 2001년에 개설되었는데, 2012. 12.경을 기준으로 7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이버 활동 및 관련 형사판결

- 1)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E의 J 산하 K팀(이하 'K팀'이라 한다)은 제1심공동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09. 2.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어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외부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였다.
- 2) 위 J 산하 4개 K팀의 직원 70~80여명은 2009.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포함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추천(찬성)' 또는 '비공감(반대)' 클릭(이하 이를 통틀어 '찬반클릭'이라 한다)하는 등의 사이버 활동(이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한 명이 복수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과 관련된 게시글 및 댓글 400건을 작성하거나, 2,835회에 걸친 찬반클릭을 하였다.¹⁾
- 3) 제1심공동피고 B 및 D, G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E법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11. 2013고합577,1060(병합)호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E법위반의 점은 일부 유죄,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전부 무죄로 판단하여 제1심공동피고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 D, G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7. 8. 30. 2015노1998호로 "피고 B은 E의 직무 범위를 본연의 국가안보기능에 한정된 E법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E F 산하 J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적 이슈와 선거에 관하여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낙선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내지 반대·비방 의견을 유포하도록 지시하였고, D은 F으로서, G는 H로서 지휘 계통에 따라 E장인 피고 B의 위와 같은 지시를 J 직원들에게 시달하여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치관여 범행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²⁾ 및 E법위반죄³⁾의 범죄사실로,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1) 위 활동 내역은 원고가 조사 및 분석한 자료(갑 제31호증)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주요 범죄사실로 하는 관련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1060(병합) 판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E K팀은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과 관련된 게시글 및 댓글 156여건을 작성하고, 1,050여회에 걸친 찬반클릭을 하였다. K팀은 주로 이 사건 사이트의 시사 게시판 등에서 하나의 게시글에 집중적으로 반대 클릭을 하면서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다가 2012. 9. 19.경부터 여러 아이디어에 의한 집중적인 반대 클릭이 원고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자 유머, 연예, 요리 게시글에 대하여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천 클릭을 많이 하여 베스트 게시판에 올리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2) 구 공직선거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D, G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4. 19.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4322).

다. E 관계인의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

L언론은 2013. 1. 28. 「M」이라는 제목으로, E 대변인이 같은 날 L언론과 인터뷰에서 “대공·대북·방첩을 포함해 국내 중복세력 척결(사이버상 중복세력 적발)이 우리(E) 업무에 들어가 있다”면서, 이 사건 사이트가 중복 사이트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중복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사건 사이트가) 중복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E 대변인의 위 발언을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31 내지 34, 38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국가 공무원인 E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추천 및 비공감으로 게시글과 댓글의 여론형성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이 붕괴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E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트의 공신력이 저하되고 이용자들의 이용시간 및 이용량이 감소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 2) 또한 E 관계자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중복 사이트’로 지칭하는 등의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 트래픽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거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 3) 구 E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정치관여죄)

①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9조(정치관여의 금지)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3)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이버 활동 및 중복 관련 발언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1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이 사건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 중복 관련 발언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내지 19, 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K팀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추천 또는 비공감 버튼을 클릭한 사실 및 특정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적 게시글이 이 사건 사이트 상위 게시판에 게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비판적 게시글에 비공감 버튼을 클릭하고, 이와 무관한 다른 게시글에 추천 버튼을 클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찬반클릭 등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이 사건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의 가해행위를 구성한다거나, 또한 그로 인하여 이 사이트 운영자인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이트는 유머, 시사, 경제, 과학 등 그 분야별로 나뉜 총 83개의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원 누구나 각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회원이 작성한 글 또는 댓글에 '추천' 및 '비공감'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은, 각 게시판의 게시글 중 10개 이상의 추천, 3개 이하의 비공감을 받은 게시글은 '베스트' 게시판에 자동 등록되고, 그중 100개 이상의 추천, 10개 이하의 비공감을 받은 게시글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댓글 중에서도,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에는 추천수에 따라 메달 모양의 아이콘이 추가되거나, 댓글에 파란색 음영이 처리되는 등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는 효과가 적용되고, 비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등, 이용자들의 추천 및 비공감 표시로 게시글과 댓글의 노출 정도 등이 달라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⁴⁾

(나) E 소속 K팀 직원들은 특정 게시글이 베스트 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에 비공감 버튼을 클릭하거나(이하 '반대 작업'이라 한다), 이와 무관한 다른 게시글에 추천 버튼을 클릭하여 이를 위 베스트 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보내는 작업(이하 '추천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K팀에서 추천 작업을 하는 방식은, 이미 추천 수가 5개 이상 쌓인 게시글에 최소 1개부터 최대 5개의 추천을 추가하여 이를 베스트 게시판 등에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일반 이용자로부터 여러 개의 추천을 확보한 게시글에 추천을 일부 추가하여 이 사건 사이트 상위게시판에 노출되게 하였다는 것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천 작업으로 인해 게시글의 게시판 내 노출도가 바뀐 양상과 지속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활동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평판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반대 작업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K팀은 '3개 이하의 비공감을 받은 게시글만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사건 사이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게시글에 최소 1개부터 최대 3개의 비공감을 추가하여 해당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판에 자동 등록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이트 이용방법 또한 일반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 내에서 이루어졌고, K팀이 달리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해킹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사정은 있지 않으며, 그러한 반대 작업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위 해당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판으로 등록될 것이 자명하다고도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관한 타당한 주장 및 증거가 없는바, 위 반대 작업 활동을 들어 이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을 붕괴하는 가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원고 사이트 운영 원칙상 금지된 행위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운영자가 2012. 9. 18. 및 같은 달 22.에 '비 공감은 이 사건 사이트 첫 방문 이후 24시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하고, 시사 게시판은

4) 당시 일일 평균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은 약 780여 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은 약 160여 건이며, 보통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은 5,000~10,000건의 조회 수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은 30,000~100,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한다.

하루 5개, 나머지 게시판은 하루 30개까지 각 비공감(반대)이 가능’, ‘회원에 한하여 베스트 게시물 추천 가능’ 등 운영 원칙을 추가로 도입하였는데, 위 새로운 운영 원칙은 원고의 기존 평판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에 불과하고, K팀 소속 직원들도 위 새로운 운영 원칙에 따라 활동한 이상, 이것만으로 위법한 가해행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한편, 제1심공동피고 B 및 D, G 등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E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E법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등이 그 입법 취지로서 국가적 법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업무방해죄 내지는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는데, 형사사건에서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반면, 민사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고, 이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 K팀이 수개월간 그 결과가 무익할 것으로 알거나 믿고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였다고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이 사건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에 모종의 위험을 가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데에서 그치고, 그 활동의 결과로 인해 원고에게 실제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2) 중복 관련 발언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0 내지 12, 2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E 대변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하여 “(이 사건 사이트가) 중복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표현한 것은, 그 표현행위 자체가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 즉 이 사이트가 중복세력과 관련한 사이트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E 대변인은 ‘이 사건 사이트가 중복5 사이트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트가 중복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표현 자체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E이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공) 등]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 보안업무 주요 직무로 하는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서,⁶⁾ 일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점, 위 표현의 주체가 E 대변인으로서 기관 전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에다가,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 61654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대공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5) ‘중복’의 사전적 의미는 ‘북한의 N당과 그 지도자의 정책, 이념 따위를 추종하는 일’이다(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참조). 또한, 우리 사회에서 ‘중복’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 등 참조).

6) 구 E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1호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특정 사이트를 두고 ‘중복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 ㉔ E 대변인의 위 발언에 앞서 2013. 1. 7. O언론에도 「P」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위 기사에 의하면 E 관계자는 2013. 1. 7. O언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북 업무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대북 업무와 관련해서 이 사건 사이트에 들어갔다”, “이 사건 사이트 자체가 중복 글 아니면 정치적인 글밖에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사실이 인정된다.

E 대변인의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 및 위 E 관계자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이른바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로, 당시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E 대변인 등의 위 각 발언을 접한 일반인들은 E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을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㉕ 또한,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 이후 당시 여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이트를 중복성향 사이트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거나, 특정 방송국 앵커가 생방송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중복 세력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E의 대변인이 이 사건 사이트가 중복세력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것이 그 이후 여론형성 등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 ㉖ 한편,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충분하다는 점(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이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로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E 대변인은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사이트가 중복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이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나 주장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㉞ 실제로도, 앞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E K팀이 수행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E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것이 아니라,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E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도 이를 정당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특정 게시글이 받은 추천 및 비공감 수에 따라 해당 게시글이 자동으로 사이트 메인에 노출되는 상위 게시판으로 이동되게 하거나, 댓글 중 많은 수의 비공감을 받은 댓글은 그 본문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평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용자들의 사용 양상도 관리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되는 게시글을 꾸준히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남북이 분단되고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중복’이라는 표현이 낯는 부정적인 인상과 위하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트가 중복세력 등과 관련이 있다는 묵시적 사실에 관한 표현은 원고가 다년간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쌓아 올린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그러나,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원칙상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모두 피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트래픽 감소, 이용자 수 감소, 클릭 수 감소 등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중복 관련 발언 이후로 이 사건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활동이 뜸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현상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대한 위자료 청구

-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이 사건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위법한 가해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 315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중복 관련 발언에 대한 위자료 청구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생긴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처럼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어겼을 때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 2045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E 대변인의 중복 관련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성,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등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중복 관련 발언의 주체,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국민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그 정치적 기본권 강화의 매체로서 갖는 구심적 역할, 위 발언으로 인해 이 사건 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진 양상, 이후 밝혀진 E의 이른바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전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청구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판결문

사 건	2022다28451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는 ‘(사이트명 생략)’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이 사건 사이트는 2001.경 개설되어 2012. 12.경 기준 7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언론사인 ‘(언론사명 생략)’은 2013. 1. 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대변인과 인터뷰를 한 후 같은 날 「국정원 “중복활동 가능성 많은 ‘○○’ 감시, 우리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 기사에는 “이 사건 사이트가 중복 사이트냐”는 (언론사명 생략)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 대변인이 “중복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사건 사이트가) 중복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답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 1) 제1심은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이트가 ‘중복 사이트’라는 오명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2) 원심은 판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다년간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쌓아 올린 명성·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하였다.
 - 3) 피고는 원심판결 중 패소부분인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적 표현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즉,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하므로, 누군가를 상대로 단순히 ‘중복’ 등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분만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쉽게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종북’이라는 표현은 과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 변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또는 태도 변화, 서로 간의 긴장 정도 등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종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 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 가.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보면, 국정원 대변인이 업무상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 언론사 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었고, 발언 내용 역시 “이 사건 사이트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는 취지에 그쳐 유보적·잠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 나. 이러한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다가 ‘종북’이라는 표현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시대적·정치적 상황 혹은 관점에 따라 의미와 이에 포함되는 범위가 유동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이해와 표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의 인식 내용 역시 가변적이어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이트에 대한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
- 다. 설령,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단순히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표현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특정인의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은 그 표현·내용상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 중 일부가 중복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인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허용할 권한 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쌓은 원고에 대한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이 사건 중복 관련 발언이 원고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도6987

“거물급 기레기” 표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언론사 대표에 대한 비판적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의견표명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라 볼 수 없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시민기자이자 지방 시청 소식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기자이자 언론사 대표이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결정 내용 및 피해자가 기부금 부정 사용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기사를 근거로, 피해자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SNS에 게시하였다.

2019년 8월경 피해자가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자신의 입장을 담은 사설을 신문과 SNS에 게재하자, 피고인은 해당 사설을 반박하는 글과 댓글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D씨는 E에서 거물급 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게시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심 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해당 표현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경멸적이며 기자로서의 외부적 평가와 명예를 저하한다며, 정당한 비판 행위를 넘어 조롱 및 경멸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25. 2020고정194)

2심 법원 또한 해당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2심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노3199)

3심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언론사 대표에 대한 의혹 및 태도와 관련된 비판의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의견 표명으로서 다소 감정적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판결 요지]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이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2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가 기자이자 언론사 대표라는 신분과 관련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모욕죄 구성요건에 부합하고,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대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이 표현이 확인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압축하여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을 섞어 부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사나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널리 쓰이는 속어로, 이 사건에서는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심 판결문

사	건	2022도6987 모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노319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 후 B(변경 전 C)의 대표이자 기자인 피해자 D를 지칭하여 “D씨는 E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글(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 1689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피고인은 F의 시민기자이자 E시청 홍보소식지 편집위원이고, 피해자는 언론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위 언론사가 발행하는 지역 신문인 B의 기자이다. 주식회사 C는 G라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피해자 측 여론조사기관'이라 한다)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다.
- 2) 피해자 측 여론조사기관은 2018. 3.경 E시장 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 지지자들이 다수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중복응답하는 방법으로 지지율을 올려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고, 전남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측 여론조사기관이 시행한 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한편 여러 언론사들은 2018. 8.경 H(이하 'H'라 한다) 집행위원회 기부금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홍보 담당 집행위원인 피해자를 비롯한 집행위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H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하였다.
- 3) 피고인은 2018. 6. 19.경부터 2019. 8. 7.경 사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SNS에 피해자 측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가담과 그 기관이 수행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피해자의 선거 관련 보도 행태, H 기부금 집행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게시하였다.
- 4) 피해자는 2019. 8. 9. 피고인이 여론조사 조작 가담, H 기부금 횡령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그 직후 지역 신문인 B에 “본지, E시 발행 ‘I’ J”이라는 제목으로 그 경위를 알리면서 정확한 진실 파악 없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쉽게 글로 옮기는 행태가 사회에 민폐를 끼친다는 취지의 사설(이하 ‘피해자 작성 기사’라 한다)을 게시하고, 2019. 8. 9. 17:25경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였다.

- 5) 피고인은 피해자 작성 기사 게시글 아래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E시장 선거에 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하고 피해자와 댓글로 언쟁하였다. 피고인은 ‘특정 후보 측 지지자들이 여론조사기관의 도움 없이 미리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일사불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언론사는 왜 여론조사 조작 사건이나 이에 연루된 사람들의 법적 처벌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는지, H 기부금 횡령 사건을 알린 언론사 기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지 등을 물으면서 ‘피해자가 집행위원으로 관여한 H 기부금 횡령 건에 대한 B의 보도를 기다리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댓글을 달지 말라고 답하였다.
- 6) 피고인은 2019. 8. 9. 19:07경 자신의 SNS에 피해자 작성 기사를 논평하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게시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피해자 작성 기사 내용을 반박하는 한편 언론사 대표의 고소 덕분에 무명의 피고인이 이름을 알릴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는 취지의 반어법 표현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7)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바른 글이라 공감이 간다’라는 취지로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자 그 아래에 이어서 ‘D씨는 E에서 거물급 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고소를 받으니 영광이죠. 조사받으러 가면 정체 폭로해줘야죠’라며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 8) 한편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1)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 2)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피고인은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결정이나 H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확인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자이자 언론사 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보도에 관하여 소극적인 행태를

취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판단이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

-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피해자 측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가담 의혹의 허구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사실을 작성하여 공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에 피해자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재차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의 SNS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자 그 아래에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 경위와 배경, 이 사건 게시글과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의 작성·게시 동기와 경위, 그 내용의 흐름과 맥락, 전체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물급 기레기’가 포함된 이 사건 표현은, 언론사 대표로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피고인의 의견을 이 사건 게시글에 이어 다시 한 번 압축하여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을 섞어 부분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 또한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사를 비하해 부르는 속어로 기사나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 역시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표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단50755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9613

전직 검찰 간부의 부실 수사 의혹 제기에 다소간 모욕적 어휘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경솔한 공격이라 단정할 수 없다

[사건 개요]

원고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이고, 피고는 법조 출입기자를 거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언론인이다. 피고는 2021년 3월경 SNS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원고가 모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발언들이 허위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과 관련하여서는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유튜브 영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발언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보아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 사건 각 발언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는 혐의없음 및 죄가안됨 처분을 받음)

2심 법원은 피고의 발언들이 다소간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비판 목적의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경솔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판결 요지]

- 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심 법원은 두 차례의 SNS 게시글은 전후 문맥상 원고가 모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왜 관여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의혹 제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 발언의 경우 모 사건의 진행 시기와 원고의 보직을 일대일로 대응시켜 원고가 구체적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그 임무를 방기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실제 원고에게 그러한 권한·책임이 부여된 바 없었으며 피고가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게시글과 영상 발언으로 나누어 게시글 부분은 기각하고 영상 발언 부분에 한해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하였다.
- 2심 법원은 이 사건 표현들이 공적 관심사였던 모 사건의 수사 경과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의 보직·권한 구조상 외관적으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던 점, 검찰 내부 지휘 체계나 업무분장 등은 외부에서 구체적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발언에 다소간 모욕적 어휘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경솔한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 언론은 주요 수사기관의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감시·비판·견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고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판단들에 근거해 2심 법원은 피고의 발언에 대한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을 조각할 여지가 크다면, 1심 법원의 피고 패소 판단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 또한 모두 기각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1가단507557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2021.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1.경 C검찰청 검사로 임관되어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C검찰청 공정거래 조사부 부장검사,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D검찰청 E 2팀장, 2017. 8. 경부터 2019. 7.경까지 C검찰청 제3차장검사, 2019. 7.경부터 2020. 1.경까지 D검찰청 F부장,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G검찰청 차장검사, 2020. 6.경부터 2021. 6.경까지 H기관 연구위원, 2021. 6.경 이후는 I기관 부원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는 기자로서 2008. 10. 1.부터 J언론 법조팀, 2012. 7. 10.부터 K언론 법조팀장, 2019. 4. 1.부터 L언론 법조팀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2021. 2. 1.부터는 L언론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구독자 약 12만 6,000여명(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M'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이른바 'N기관 투기의혹' 사건

- (1) 정부가 2021. 2. 24.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일대에 대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3. 2. O단체와 P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대장 등의 확인을 통해 N기관(N기관) 직원 10여명이 신도시 토지 7천평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N기관 직원의 투기의혹을 제기하였다.
- (2) 정부는 N기관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익명 게시판 게시글 및 이에 관한 언론보도

- (1) 2021. 3. 8. D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직장 익명 게시판인 'Q'에 'R'라는 제목으로 "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리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며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A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N기관, 광명, 시흥 부동산업체, 묘목공급업체, 지분쪼개기 컨설팅업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을거야..., ...검찰은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면서 위와 같은 전수조사 등의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고, 원고의 지휘 아래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했다면 진상파악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2) S언론은 2021. 3. 9. 「T」이라는 제목 하에 위 게시글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라.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재 및 이 사건 영상물의 업로드

- (1) 피고는 2021. 3. 9. 위 기사를 포스팅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①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A이가 U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V이는 왜 U에선 아무것도 안했대? W가 봐, 백사장 한 가운데 초고층 빌딩이 서 있고 그게 U야. 보는 순간 딱 부동산의 'ㅂ'도 모르는 사람까지 느낌이 와 도대체 이런 건물이 어떻게 여기 들어섰지? V이와 A이는 왜 그건 안했대? S언론...이런 걸 보도¹⁾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라는 글(이하, '이 사건 1차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했다. 해당 기자의 주장과 달리 A 검사장은 U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S언론 등 언론매체는 위 입장문을 기사로 내보냈다.

1) '보고'의 오기로 보인다.

- (3) 그러자 같은 날 피고는 S언론이 내보낸 위 입장문에 관한 기사의 제목 'X'를 포스팅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S언론이고 A이고...문해력 수준하곤... 내가 언제 A이 된 수사를 했다고 꼬집었나? 두 달이면 수사를 끝낸다는, 그 잘난 놈이 U는 왜 아무것도 안했냐고 꼬집었지...", "A이 공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래 U 관련 포스팅을 문제삼았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더니...(그래도 검사장인데 고삐리 과외하듯 설명할 수도 없고...참내)"라는 글(이하, '이 사건 2차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 (4) 이어 피고는 2021. 3. 11. L언론 논설위원의 자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위 'M'에 [Y], [Z]라는 제목으로 "...A 검사는 U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U 사건은 2016. 4.경부터 2020. 10.경까지 계속된 사건인데요...A 검사는 이 때 E 제2팀장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반부패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부산지역 U 사건, 부산지역 사건이지만 부산 출신의 중앙정부 관계 인사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검 제3차장을 했습니다. 역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검 반부패부장일 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거는 AA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G검 차장검사도 했습니다. 당연히 A 검사도 U 수사를 할 수 있었겠죠...그런데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A은 두 달이면 N기관 다 파헤친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는 분이 왜 U 사건은 왜 안했느냐 말이예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국민들은 다 그걸 묻고 싶을 거예요. 두 달이면 한다는 사람이 왜 그걸 안했냐고..."라는 내용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하고, 위 발언을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업로드하였다.

마. 이른바 'U 게이트3)' 사건(이하, 'U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경과 및 언론보도 등

- (1) AA검찰청 등부지청은 2015. 1.경부터 U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17. 3. 7. AB 등 관계자를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특검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 (2) AC단체 등에서 2017. 5. 17. C검찰청에 U 회장 외 5인을 고발하였으나 2017. 8. 23. 형사1부(제1차장검사 산하)는 부장검사 전결로 위 고발사건을 피고발인의 현재지(부산구치소 미결수용) 관할청인 AA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
- (3) AC단체에서 그 후 2017.경 'AB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하였으나 AA검찰청은 2020. 10.경 AB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인만을 기소하고 41명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2) 영상(갑 10호증) 중 9:40 - 17:00 부분

3) 부산 W 해수욕장 앞에 당초 주거시설 개발이 불가능한 중심지 미관지구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해 U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주도한 AE회사 AB 회장 등이 개발, 분양 및 이에 대한 범죄 수사 과정에서 부산시 및 정관계인사 등에게 특혜를 주고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 (4) 2021. 3. 9. AD언론은 AB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U 특혜분양 리스트의 존재와 위 리스트에 이름이 적혀 있는 100여 명 중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과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란 입장을 내놓았고, U 측은 ‘미분양 사태가 이어져 잔여세대 분양을 위해 만든 고객리스트’라고 설명하였다.
- (5) AF언론은 2021. 3. 11. ‘위 특혜분양 리스트가 담겨 있던 하드디스크는 검찰이 5년 전 U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이미 확보했었다는 내부 주장이 나왔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다. 같은 날 법무부장관은 ‘검찰과 법원이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을 덮기로 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제라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묻힌 부동산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와 사법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바. 형사사건의 경과

한편, 이 사건 각 게시글과 발언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C검찰청은 2021. 12. 20.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및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 갑 12 내지 14호증, 갑 17 내지 1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녹음취취결과, 이 법원의 C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U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었고, 수사에 개입할 수도 없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재와 발언으로 ‘원고가 U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부실 수사를 주도하였거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게시글과 발언은 원고의 추상적 권한의 존재를 전제로 원고가 U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공식적인 사실을 인정한 채 게시되고 발언된 것으로 피고의 그간 법조경력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도 아니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와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한편,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2)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각 게시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게시글 전반부의 표현(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A이가 U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만을 보면 원고가 U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나, 이 사건 1차 게시글 후반부의 표현과 원고의 입장문 발표 후 게시된 이 사건 2차 게시글의 내용 및 전후 문맥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모욕적인 표현이 동반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U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넘어서 원고가 U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가 U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U 사건은 2017. 3. 7.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그 후에도 고발이 이루어져 관련자가 기소되었고, 이 사건 발언 당시까지도 언론 및 정치권에서 부실 수사 및 그 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던 공적인 관심사항인 점, ④ S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주요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기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발언

앞서 본 증거들과 갑 11, 21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한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①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E 제2팀장, C검찰청 제3차장검사, D검찰청 F부장, G검차장검사로 재직할 동안 내내 U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고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취지이다.
- ② 검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진 직무분장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건을 수사, 내사 및 지휘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백하다. 원고는 E 제2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AG 비리수사를 하다가 AH 특별수사팀에 파견되었을 뿐 수사단장으로부터 U 게이트 사건을 배당받은 적이 없었고, C검찰청 제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1차장검사 휘하 형사1부장이 U 회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전결로 관할청인 AA검찰청에 이송한 외에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할 상황이 없었으며, F부장 재직 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결재를 하거나 상부의 지시 등의 사유로 소속 직원들에게 사건 파악, 지휘, 보고 등을 지시한 적이 없는 등(G검차장은 AA검찰청 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위 각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U 사건 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

- ③ 이 사건 영상의 목적이 이 사건 1차 게시글의 의미를 오독한 원고의 문해력을 탓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족하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영상에서는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는 없었던 U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그 기간 중 원고의 각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각 직위의 재직기간 내내 U 사건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그 이유를 묻고 있는바, 피고의 오랜 법조기자의 경력과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위 발언의 의미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직위에 따른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U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그 임무를 방기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 ④ 위 각 직위에 있을 당시 원고에게 U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가 그 전에 작성 또는 검토한 기사만으로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주장 및 증거가 없다.
- ⑤ 이 사건 발언이 공직자의 수사 공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위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가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영상의 제목과 내용, 이 사건 발언의 시간, 이 사건 발언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발언이 원고의 공직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수, 이 사건 영상의 조회수 및 파급력,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 게시일인 2021.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23나2961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2023. 5. 11. 선고 2021가단507557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1.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 중 기초사실에 관한 것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의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U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었고, 수사에 개입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1차 게시글 전반부의 표현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A이가 U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V이는 왜 U에선 아무것도 안했대?」 부분 및 같은 글 후반부 표현인 「V이와 A이는 왜 그건 안했대?」 부분은 원고가 U 사건 수사를 주도 내지 담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U 사건의 수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사건 2차 게시글의 내용 중 「두 달이면 수사를 끝낸다는, 그 잘난 놈이 U는 왜 아무것도 안했냐고 꼬집었지... 하여튼 웃겨」 부분은 원고가 U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었음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U 사건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 각 게시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영상에 담긴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U 사건 수사 당시 해당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부실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 15922 판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발언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발언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련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이때 그러한 표현이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을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등 참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갑 제11, 2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게시글 및 이 사건 발언은 다소간 모욕적 표현이 동반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U 사건은 2017. 3. 7.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그 후에도 고발이 이루어져 관련자가 기소되었고,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재와 이 사건 발언 당시까지도 언론 및 정치권에서 부실 수사 및 그 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공적인 관심사항이었다.
- ② 이 사건 각 게시글과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D검찰청 E 제2팀장, C검찰청 제3차장검사, D검찰청 F부장, G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할 동안 내내 U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취지이다.
- ③ U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시기에 원고가 위 직위들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U 사건 수사는 원고가 C검찰청 제3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을 무렵 같은 검찰청에서도 이를 잠시나마 담당할 바 있고(다만, 제1차장검사 산하의 형사1부에서 담당하다가

이를 AA검찰청으로 이송하였음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D검찰청 E이나 D검찰청 F부장의 경우 그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으며, G검찰청의 경우 U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AA검찰청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어 각 외관상으로는 원고에게 U 사건 수사에 일정한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비쳐지는 측면이 있다.

- ④ 이 사건 1차 게시글 전반부의 표현(“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A이가 U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만을 보면 원고가 U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으나, 이 사건 1차 게시글 후반부의 표현과 원고의 입장문 발표 후 게시된 이 사건 2차 게시글의 내용 및 전후 문맥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U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적절히 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U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⑤ 개별 사건의 처리 경과, D검찰청의 지휘 여부 및 지휘 대상, 각 부서간 업무분장 및 업무권한 등은 검찰 내부정보로서 범조기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용이하지 않다(을 제1호증의 불기소이유 참조).
- ⑥ 이 사건 각 게시글에 원고에 대한 공격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주요 목적에는 S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 ⑦ 이 사건 1차 게시글 및 이 사건 발언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이 사건 2차 게시글의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C검찰청도 2021. 12. 20.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죄가안됨]을 하였다.
- ⑧ 원고가 U 사건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원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하여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U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감시·비판·견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합65738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나2010110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원고에 대한 의혹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정황에 근거하고 있어 그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건 개요]

원고 단체와 단체 대표는 피고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원고들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망사건 등에 연루된 것처럼 묘사하였고 원고 단체를 '사이비 종교집단', 대표를 '교주'로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다면서, 피고로 인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원고별 각 5천만 원의 위자료와 영상 삭제를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제작한 영상이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피고들이 영상에서 제시한 의혹은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기반하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2심 법원 또한 원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공공의 이해에 대한 것이고 피고들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또 영상 삭제 청구에 대해서도 영상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기에 이유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현재 3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판결 요지]

-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사건 의혹의 진실성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영상에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피고들은 과거 사건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인터뷰, 선행 형사사건 판결문, 언론보도, 공문서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영상을 제작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 언론보도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서비스(OTT)는 한정된 구독자에 의한 적극적 구매행위에 기하여만 제공되고, 피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할 뿐 언론기관이 아니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 역시 해당 서비스를 상업매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덧붙여 법원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영상에 관하여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내용이 수인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2심 법원은 영상에 허위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의혹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피고들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피고 제작진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선행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언론보도, 공문서, 과거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거쳤고 제보자의 답변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영상의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도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이유가 없으며, 영상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기에 영상 삭제청구도 이유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3가합65738 손해배상(기)		
원	고	A단체 B		
피	고	D회사 E회사 F 유한회사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영상을 인터넷 웹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 및 G 앱(application)에서 삭제·폐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급하거나 직접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인터넷 웹사이트 G나 G 앱 등에서 상영·전송·판매·배포·공표·공중송신·방송·광고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을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s/Sites) 등에 게시·전송·유통·광고하거나 영상물이나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발행·제공·배포·공표·공중송신·방송·전송·상영·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책이나 정기간행물·광고물·기타 출판물 등의 인쇄물 또는 홍보물을 제작·편집·발행·판매·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각 그 인쇄물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를 풀고, 원고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각 그 의무불이행 기간 1일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쟁점의 정리

피고들의 구독형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G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를 통하여 2023. 3.경부터 “H”이라는 제목의 8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영 중인 사실, 위 다큐멘터리에 원고들에 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영상(이하 그중 제5화를 ‘제1영상’이라고, 제6화를 ‘제2영상’이라고 하고, 제1, 2영상을 합하여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자신들에 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허위사실을 이 사건 영상이 적시하여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별지 제2목록에 관하여 사실의 적시성 및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실의 적시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 (1) 원고 B은 원고 A단체(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의 지도자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I, J의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7. 5. 19. 선고 96고합74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3. 3. 선고 97노1138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선형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 (2) 선형 형사사건 확정 후 원고 A의 구성원으로서 위 사건의 증인이었던 K가 원고 B의 지시로 J의 사체를 원고 A의 땅에 매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2001. 7. 경 K가 지목한 장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체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
- (3) 주식회사 L의 “M” 프로그램은 선형 형사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위 (2)항 기재 발굴 작업 현장과 원고 A의 구성원 및 탈퇴자의 상반된 진술을 담은 “N”이라는 영상(이하 ‘선형 영상’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였다.

- (4) 선행 영상은 2001. 7. 28. 방영 예정으로 2001. 7. 21. 예고편이 방영되었는데, 원고 B은 2001. 7. 23.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행 영상에 관하여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7. 28. 2001카합1627 결정)을 받았고, 이에 주식회사 L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같은 법원 2001. 9. 20. 2001카합1663 결정)이 이루어져 선행 영상의 방영은 불발되었다 {이하 선행 영상에 관한 위 (4)항 기재 사건들을 모두 합하여 ‘선행 영상 사건’이라고 한다}.
- (5) 검사 재직 시 선행 형사사건을 수사했던 O는 퇴직 후인 2003. 8. 23. 작가로서 위 사건을 재구성한 “P”이라는 제목의 도서(이하 ‘선행 도서’라고 한다)를 출간하였고, 원고 B은 2003. 8. 28.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행 도서에 관하여 출판물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1. 14. 2003 카합1464 결정)을 받았다.
- (6) 원고 B은 2003. 8. 28. 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선행 도서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원고의 명예 등을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일부 인용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3가합6217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4나80290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19248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선행 도서에 관한 위 (5), (6)항 기재 사건들을 모두 합하여 ‘선행 도서 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6,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갑22호증의 15, 을5호증, 을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상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의혹’이라고 한다)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영상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 (1) 선행 영상은 위 나.의 (2)항 기재 발굴 작업 현장을 제작진이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모두 5차례의 내레이션을 통해서 제작진이 직접적으로 선행 형사사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취지임을 밝히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영상은 위 사건 결론의 타당성을 제작진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타당성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소개하는

취지에 불과한바, 선행 영상 사건과 이 사건은 사안을 달리한다.

- (2) 선행 도서는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담당검사가 겪었던 일을 소설화한 것으로서 표지에는 “Q”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사건의 실제 관련자를 소설 속 인물로 치환하여 그들이 이 사건 의혹의 진실성을 전제로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러한 전제는 위 (1)항 말미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 도서 사건과 이 사건은 사안을 달리한다.
- (3) 이 사건 영상은 I의 모친인 R의 인터뷰로 시작하는바, R가 스스로를 “저는 1996년 A 사건 났을 때 그 떠들썩하게 했던 그 매정한 참 I엄마 R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R의 동생 S, O, 원고 A의 구성원이었던 17명이 등장하여 발언하고(이하 그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관련자’라고 한다), 그들의 발언 중간에 그와 관련된 뉴스자료나 과거 영상이 삽입되어 있다.
- (4) 이 사건 영상의 재연장면 역시 주로 이 사건 관련자의 발언내용을 시각화한 것으로서 그 발언에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 (5) 이 사건 영상 중 제작진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① R에게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도대체 I의 어머니가 누군가”라며 말을 덧붙이는 장면(제1영상 시작 1분 10초경), ② “본 음성 녹취는 2021년 5월 21일 A 사건 발생 25년 만에 이뤄진 제작진과 K씨 사이의 통화 내용입니다.”는 자막에 이어진 K와의 인터뷰 음성(제2영상 시작 30분 47초경부터 31분 19초경까지 사이), ③ R가 “I는 저기서 맞아서 굶어죽었습니다”라고 하자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라고 되묻는 장면(제2영상 시작 33분 13초경) 외에 없는데, 위 장면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 (6) 이 사건 영상에 원고 B이 I, J을 살해하였다거나 살해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제2영상 말미(위 영상 시작 36분 10초경부터 36분 21초경까지 사이)는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이 무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 (7) 이 사건 영상은 T의 경우 사망사실 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제2영상 시작 9분 55초경), U의 경우 유족이 사망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는바(제2영상 시작 10분 13초경부터 10분 54초경까지 사이), 그에 관한 이 사건 관련자의 발언도 “그건 의문사예요. 전혀 몰라 모르겠어요.”(제2영상 시작 10분 8초경)에 불과하다.
- (8) 이 사건 영상은 선행 형사사건에서의 K 진술이 반복되었고(제2영상 시작 22분 54초경), K의 진술에 따라 위 나.의 (2)항 기재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J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제2영상 시작 26분 3초경)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9) 제1영상 시작 2분경부터 2분 43초경까지는 앵커와 기자의 리포트 영상을 포함한 뉴스자료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잠잠하던 사이비종교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A이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신도들의 재산을 뺏고 교주를 따르지 않는 신도 3명을 살해한 사이비 교단의 핵심 간부 네 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교주 B 등은 이곳의 사이비 종교집단을

만들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거나 지상천국을 만들어주겠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교주 B은 자신을 신격화시킨 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신도들은 무차별 구타했습니다.”다는 것인바, 위 뉴스 자료는 위 (3)항 기재 R의 소개 발언에 이어서 그 발언 속 “V 사건”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에 불과하다.

- (10) 이 사건 영상 중 “재림예수” 부분은 제1영상 시작 19분 16초경 이 사건 관련자가 “(원고 B을) 재림예수로 믿었죠.”라고 발언한 것이 전부이다.
- (11) 이 사건 영상 중 A 행사자료 또는 재연영상 역시 이 사건 관련자의 발언에 이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 (12) 이 사건 영상이 방영된 후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의혹에 관하여 진실 규명 내지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는바,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적시한 것이라면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13) 언론보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서비스는 한정된 구독자에 의한 적극적 구매행위에 기하여만 제공된다.
- (14) 피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할 뿐 언론기관이 아니고, 이 사건 서비스의 회원들 역시 위 서비스를 상업매체로 인식하고 있다.
- (15) 결국 이 사건 영상은 이 사건 의혹의 진실성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피고들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은 “원고 B은 점차 자신을 신격화하고 종말론이나 ‘영원히 죽지 않는 X’ 등을 강조하는 설교를 행하고, 아이들처럼 천진무구하고 영생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을 ‘W’라고 부르도록 하였으며, 1989년 증추절에 거행된 ‘X원년식행사’에서는 ‘X’가 도래하였으며 자신이 곧 ‘Y’이자 ‘구세주’라고 선포하기도 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 (2) 종교단체란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념적 요소로서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 예식·행사, 인적·조직적 요소로서 성직자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 시설이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위 (1)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지위와 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을 종교단체로서 볼 수 있다(한편 ‘사이비’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바, 사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사실적사가 아니라 의견표명의 영역에 불과하다).
- (3)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은 “원고 B의 지도자의 위치가 점차 강화되면서, ‘인정선, 정육선, 물육선’을 끊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삼선교리에 따라 가정의 존재나 결혼, 이성 간의 사랑, 재산의 사적 소유 등은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징벌로서 어린아이들은 돼지우리에 가두고, 어른의 경우에는 남자는 ‘Z’, 여자는 ‘AA’이란 이름으로 중노동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I, J 등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한 체벌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엄격한 내부규율과 징벌 때문에 1980년대 후반 경부터 원고 A 이탈자가 속출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 (4) 선행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은 “원고 A은 그 구성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가로막는 어떠한 인적, 물적 장치도 갖추지 아니하고 탈퇴한 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한 일이 없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 이외에는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원고 A 내에서 별다른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원고 A의 수입과 지출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원고 B을 비롯한 소위 지도부의 생활이 호화롭고 부도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서 폐쇄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A은 초기의 순수한 협업마을의 성격에서 피고인 B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부각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변질은 되었으나 그렇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피고인 B을 교주로 한 사이비종교집단이라거나 피고인 B 개인의 신성왕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① 원고 A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구입하여 조성한 농장에서 공동으로 과수원, 양잠업 등

영농생활을 하고 그와 병행하여 소규모로 서울 종로 등지에서 레코드음반 판매업을 하면서 의식주는 거의 자급자족 형태를 취하고, 구성원들 개인의 사적 소유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은 생각도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였고, 위와 같은 무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음반판매업은 발전을 거듭하여 1990년대 이르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B와 AC, 그리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AF 주식회사,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X'라는 8개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 A 구성원들은 일부는 농장에서, 상당수는 위 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번갈아 가면서 일하기도 하였는데, 위 업체에서 1주일 동안 번 수익금은 주말에 원고 A으로 옮겨져 원고 B의 금고에 보관되었다가 각 업체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은 다시 가져가고, 나머지는 원고 A의 운영비 및 부동산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② 원고 A은 현재 구성원들의 무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 막대한 양의 부동산을 원고 B 및 그 가족들과 일부 구성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많은 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나, 원고 A 재산의 소유형태나 분배방법 등을 정하는 어떠한 형태의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기준도 없어 원고 A 탈퇴자와 원고 A 사이, 원고 A이 해체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성원들 상호간의 재산분배문제, 그리고 원고 A에 대한 채권자 등의 법적 권리확보문제 등에 있어 커다란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5) 선형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은 “AI, AJ, AK, AL는 AM 등과 함께 1987. 8.경 원고 A 내 돼지우리에 묶여 있는 I를 뽕나무가지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I는 사망하였는데, AN, R는 의사에게 부탁하여 I의 사체를 검안하지 아니한 채 그 사망원인을 선천성심질환, 중간선형사인이 심부전증이라는 내용의 사체검안서를 발급 받은 다음 1987. 8. 18. AO화장터에서 화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I가 사망한 후 원고 A에 남아 있는 R가 그 사망원인과 장소를 은폐하려고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 등을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은 그러한 행위가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6) 선형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원고 B은 J이 원고 A 내부 규율을 어기고 자신의 아들과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1988. 11.말경 서울 AE사에 근무 중인 J을 자신의 차에 태워 원고 A 내에 있는 창고로 데려와 J의 부모와 AJ, AI, AK, AM 등 약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J을 무릎 꿇게 한 다음, 말을 듣지 않으니 정신차리게 단단히 혼내 주라면서 먼저 J의 부모로 하여금 때리도록 지시하여 그의 아버지 AP이 J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어머니 AQ도 손바닥으로 몇 차례 얼굴과 등을 때리다가 나중에는 회초리로 엉덩이를 부분을 때렸고, 그 후 AJ를 시작으로 AI, AK, AM, AR, AS, AT, AU 등이 번갈아 가면서 3시간여에 걸쳐 뽕나무 가지, 각목 등으로 J의 온 몸을 때렸으며, J은 위와 같은 집단폭행으로 그 자리에 실신하여 쓰러진 후 현재까지 그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원고 B는 그 후 J이 가출하였다고 원고 A 내 구성원들에게 말하였으며, AP은 그로부터 약 8, 9개월이 지난 후에야 J이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가출하였다고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7)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한 것으로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B가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 (8) 이 사건 영상 속 이 사건 관련자의 발언 대부분은 위 (5) 및 (6)항 기재 사정에 관한 판단에 불과하다.
- (9) U, AV의 사망경위가 불명확하고, J도 위 (6)항 기재 폭행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바, 그들이 모두 원고 A의 구성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 (10) R는 선행 형사사건에서는 “I가 원고 A 내에서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서울 AW에 있는 집에서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영상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I에 대한 집단 폭행이 있었고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그 무렵에는 원고 A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컸고, 원고 B 측에서 어딘지 모르는 호텔로 불러 잘 협조하라는 식으로 말하였기에 그에 따랐다.”고 발언하였는바, 위 사건의 확정판결은 위 (5)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위 발언과의 사이에 R이 원고 A에서 탈퇴하였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 (11) 선행 형사사건에서 K의 진술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결국 J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K는 이 사건 영상에서 “J의 시체를 묻은 것은 본인이 맞고, 원고 B의 얘기를 듣고 묻은 것을 또 안 묻었다고 하였으며, 진술 반복의 조건으로 땅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바, 위 발언이 K에게 불리한 내용인 점, 순천시 AX 임야 면적 48,679㎡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원고 A이 제기한 점(대전지방법원 2018. 3. 9. 선고 2017가단20744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의 신빙성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설령 원고 B이 이 사건 영상에 관하여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영상이 수인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24나201011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단체 B
피고, 피항소인		D회사 E회사 F 유한회사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합6573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제1심 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 및 G 앱(application)에서 삭제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그 의무불이행 기간 1일당 5,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 청구취지 중 금지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면 15행부터 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나아가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외의 연관 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한편,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서 6면 3행 중 “불과하다.”를 “불과하거나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6면 9~10행 중 “불과한바, ~ 달리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불과하여 원고 B의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한 특정 견해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론짓고 있지는 않은바, 선행 영상과 이 사건 영상은 표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6면 마지막 행의 “삽입되어 있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삽입되어 있으며, 뉴스자료는 과거 원고들에 대한 사건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을 당시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었던 뉴스 영상을 재생하거나 관련 기사의 제목 등을 읽는 내레이션 음성이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 제1심 판결서 7면 10행 중 “없는바,”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제작진의 개입은 발언자들에 대하여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인터뷰 기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제작진은 이 사건 관련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사실에 관한 그들의 주관적 입장과 평가를 소개하였을 뿐 위 사실의 진실성을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 제1심 판결서 7면 14행 중 “명시하고 있다.”를 “명시하고 있으며, 선행 형사사건의 타당성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나 가치판단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8면 7행 중 “B은”을 “B”으로, 9행 중 “다는 것인바,”를 “라는 것인바,”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9면 2행 중 “인식하고 있다.” 다음에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도 제작진의 기획 의도 부각 및 시청자의 흥미 유발 등을 위하여 표현 방식 등에서 다소간 연출이 가미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이 사건 서비스의 특성상 용인될 수 있고, 이를 접하는 구독자들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하고 내용을 걸러내 이해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8행 중 “선포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또한 원고 B은 신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원고 A단체의 책임자로서 그 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개최되는 집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임무를 부여하는 등으로 의사결정 및 집행행위를 총괄하였고, 그의 핵심 추종세력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13면 17행의 “불과하다.”를 “불과하고, 이 사건 영상은 폐쇄적인 종교집단 내부에서 절대적 지위를 가진 자의 지시와 교리를 기초로 구성원에 대한 가혹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해졌던 사실과 구성원의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던 사실과 의혹을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넘어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통해 제1심 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영상에서 원고 A단체를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원고 B을 그 교주라고 단정하여 표현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통해 제1심 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영상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영상이 이 사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6, 8,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혹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영상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어도 피고들이 이 사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① 이 사건 영상은 선행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했던 과거의 신도들이 그 증언이 진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고백을 해온 것을 바탕으로 원고 A단체 내에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강한 의혹 내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영상은 종교집단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재조명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이 사건 영상의 제작진은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선행 형사사건의 판결문, 언론기관의 언론 보도,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 과거 사진 및 영상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 중 피고들의 제작진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인터뷰나 제보 내용에 위 제작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방향의 답변을 유도하였다거나 그 답변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달리 위 제보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영상에 언급된 사정과 관련 제보 내용은 원고 A단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영상의 제작진은 제작과정에서 2022. 3. 18.경 및 같은 달 23일경 원고 A단체를 수신인으로, 원고 B를 참조인으로 하여, 'I 군의 부모나 J씨 관계자의 증언이 있고 J 씨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면서 원고 B 혹은 그 대리인에게 반론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원고들의 입장을 듣거나 그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고 A단체 측의 BC가 원고 B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인터뷰를 거절하여 원고들의 입장을 이 사건 영상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영상이 원고 A단체를 사이버 종교집단으로, 원고 B를 그 교주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 형식이나 내용이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다소간의 과정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영상이 실명 및 전과를 공개하고,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은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이 무죄임을 밝히고 있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명 등에 관한 이익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영상 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통해 제1심 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허위·왜곡·비방 사실을 계속 상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영상의 삭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영상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혹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영상의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시청자들이 받을 인상과 이해 및 여과의 정도, 표현의 자유, 언론과 방송의 자유, 시청자 등의 알권리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영상이 위법하여 삭제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6. 대구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가합200469

허위사실을 공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은 민사상 명예훼손 여부 판단의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사실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구 서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조합이고, 피고는 모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다. 피고는 2022년 10월 16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원고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민간재개발사업임에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언급하고,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토지확보수단으로서 수용이 가능하며 이에 불응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 영상과 관련해, 피고는 '사건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었으며, 정식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허위사실로 인해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의 방송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200만 원 지급과 6개월간의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하였다.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동일한 결론으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3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판결 요지]

-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다른 증거와 비교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법원은 이 사건 영상에 사업 부지가 표시되었고, 해당 사업이 공공재개발사업이어서 민간재개발과 달리 토지수용 및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며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업 성격과 위험성에 대해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형사판결에서도 허위성이 인정되어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피고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이 공공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전해 들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기사들에도 원고의 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공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면, 그렇기에 피고가 허위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 확인 절차 없이 영상을 게시하였고, 경찰 조사 전까지 장기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채 상당수 시청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영상의 목적과 내용 등, 영상의 영리성, 영상이 송출된 유튜브 채널의 전파성과 인지도, 피고가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 유튜브 채널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는 방송을 올리고, 해당 방송을 6개월간 게시하라고 명령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4가합200469 손해배상(기)		
원	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6.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C'(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는 방송을 하고, 위 방송 영상을 위 유튜브 채널에 6개월 동안 게시하라.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2항 기재 게시기간에 미달하여 게시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2022. 10. 16. [D]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¹⁾에, 별지 2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통상의 발화 속도에 맞추어 낭독하는 영상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6개월 동안 게시하라. 만약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시일수에 미달하게 게시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대구 서구 E 일원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유튜브 채널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 나. 피고는 2022. 10. 16. 위 유튜브 채널에 「D」이라는 제목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 다. 피고는 2023. 3. 10. 대구지방법원 2023고약2532호로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여 ① 사실은 이 사건 사업은 민간재개발사업임에도 공공재개발사업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② 민간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이나 토지확보수단으로서 수용이 가능한 점은 동일하고, 수용시 인도 불응하면 벌칙 적용이 가능한 점도 마찬가지로, 마치 민간재개발이면 수용 및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데,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용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2. 4. 2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437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3. 8. 17.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피고가 2022. 10. 16. [D]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은 피고가 운영하는 'C'(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의 채널을 의미하므로, 이로써 피고가 운영하는 위 유튜브 채널을 특정한 것으로 선해한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23노3361호로 항소 및 대법원 2024도11654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24. 9.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민간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이고, 이로 인해 민간재개발과 달리 강제적인 토지 수용이 가능하고 이에 불응 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다른 민간재개발사업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하고 투자가치가 낮은 사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률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업지의 분양신청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졌고,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갑작스럽게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게 되었으며, 원고의 명예와 신용 등이 훼손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아울러 피해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와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재개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공공재개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관한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였을 뿐 원고나 이 사건 사업을 방해하거나 이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 사건 영상을 비공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판단

가.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상의 화면에는 이 사건 사업 부지가 재개발 예정지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게 표시되어 있고, 피고는 해당 사업지가 공공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어서 민간재개발사업과 달리 토지가 수용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피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하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이 공공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해 민간재개발사업과 달리 토지 수용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영상에서 한 발언은 허위라고 보이고, 달리 유력한 증거자료인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영상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원고는 그 명예나 대외적인 신용도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작성·게시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대구광역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공공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전해 들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기사들(을 1호증의 1~4)에서도 이 사건 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사업이 공공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공공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해 다른 민간재개발사업과 달리 토지가 수용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양형만을 다툰 점, ③ 이 사건 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0. 16. 이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을 보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가 경찰 조사를 받을 시점까지 이 사건 영상이 위 유튜브 채널에 계속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상당수의 시청자가 이 사건 영상을 조회하였을 것으로 추인되고,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영상으로 인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그 밖에 이 사건 영상의 목적·내용·형식·표현 방법, 이 사건 영상 제작의 영리성, 이 사건 영상이 송출된 유튜브 채널의 전파성과 인지도, 피고가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금액을 200만 원으로 정한다(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고(인용부분을 넘어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영상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적거나, 원고의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 또는 원고의 평가 내지 의견에 해당한다), 정정보도의 게재 방법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한다.

2)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현재까지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상황, 피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 후에도 위 정정보도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를 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사건 영상 게시기간으로 명하는 6개월에 미달하여 게시한 경우, 피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원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251385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는 ‘보도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의미함에도 허위 내용의 적시로 인해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정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다면 조정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이고, 피고는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23년 2월 8일 원고는 모 프로그램에서 피고 소속 지입차주 사망 사건을 다루며 피고의 사업구조 실태와 문제점 등을 보도하였다. 피고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양측은 2023년 3월 7일 반론보도문 게시와 이행 지연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23년 3월 2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 “원고 언론 방송 관련 피고 공식입장문” 영상을 게시하며 ‘허위조작방송’ 등 해시태그를 붙이고, 반론보도문 게시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이 영상이 자신들이 허위 방송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3,00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발언과 해시태그, 영상 내용이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방송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실제 댓글에도 이를 전제로 한 비판이 다수 있었다며, 원고의 사회적 명성 훼손을 인정해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판결 요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제17호에 의하면,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고,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방송에 관한 반론보도문을 게시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방송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법원은 피고가 반론보도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영상 도입부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등의 멘트를 하고, '허위조작방송'등 해시태그를 사용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사인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에게 부담하고, 이 사건 영상의 게시 기간 및 일반 국민들에 대한 노출 정도, 영상 게시 전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3가단25138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2024. 11. 28.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의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이고, 피고는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23. 2. 8. 2TV <C> 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지입차주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배송 화물차 사업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보도하는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2023. 2. 20. 언론중재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조정절차를 '이 사건 조정절차'라 한다).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2023. 3. 7. 원고가 2023. 3. 14. 18:00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홈페이지 및 E 채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이하 '이 사건 반론보도문'이라 한다)을 게시하고, 원고가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반론보도문>

제목 : [반론보도문] 「<C> D」 제목의 보도 관련

본문 : A 는 2023년 2월 8일 <C> 프로그램에서 「D」
」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 측은 “망인의 운송계약에 따른 작업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였으며, 그 이후 오배송 작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았고, 중고차량을 팔아서 수익을 취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라. 피고는 2023. 3. 21. 피고가 운영하는 E 채널에 “A언론 방송 관련 피고 공식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면서, 본문에 '허위조작방송, 조작, 허위보도, F, F기자, 공영방송, C, 언론중재, 사실내용, 화물운송, A언론시사, 악마의편집피해' 등을 해시태그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영상은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A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으며, 이번에 나온 반론보도 결과처럼 A언론이 이례적인 결정에

응했다. 피고가 만약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팩트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았다면 이런 이례적인 성과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 뒤,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를 그대로 읽은 후 ‘피고 계열사 포함 1,600명 소속 지입차주분들과 수많은 거래처들의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인사말로 마무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상은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반론보도를 하게 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영상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사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제17호에 의하면,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고,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방송에 관한 반론보도문을 게시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방송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영상 도입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라거나 “만약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팩트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았다면 이런 이례적인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 사건 영상의 말미에서 ‘지입차주분들과 거래처들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을 이 사건 영상 게시물의 본문에도 기재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영상 게시물 본문에 기재된 해시태그 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은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으로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여 방송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이 사건 영상의 댓글에는 원고가 거짓방송을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들이 많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조서를 그대로 읽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정조서의 본문에는 원고가 반론보도문을 게시하기로 한다는 등의 조정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1]로 피고가 주장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별지2]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이 각 첨부되어 있어,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조정조서를 순서대로 읽을 경우, 마치 이 사건

조정에서 [별지1]로 첨부된 피고가 주장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인정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의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로서, 다른 언론사에 비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이 더욱 고도로 요구되고,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영상의 게시기간 및 일반 국민들에 대한 노출 정도, 이 사건 영상 게시 전후의 피고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 게시일인 2023.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8.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결정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사건 개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청구인은 선거 전 단계에서 특정 인물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및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비방금지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금지의 범위도 제한적인 점,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하였으나, 비방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그밖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였다.

[판결 요지]

-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중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뜻하여 개념이 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입법목적 달성이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 위 조항에 따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공정한 선거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며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다음으로,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0조제1항이 사생활 비방만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비방의 대상이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의 사실인지 불문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일 뿐 아니라, 이 조항이 없어도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 조항이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 '비방'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인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본 결정은 종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75 결정을 변경하는 취지이며, 일부 재판관은 인터넷 환경의 확산,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합헌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판결문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재 2021. 2. 25. 2018헌바223, 판례집 33-1, 219, 227-229
헌재 2023. 7. 20. 2022헌바299
2. 헌재 2004. 11. 25. 2002헌바85, 판례집 16-2하, 345, 350
헌재 2010. 11. 25. 2010헌바53, 판례집 22-2하, 425, 432-434
3. 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판례집 34-2, 11, 22-23

【당사자】

청구인 양○○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2022도8646 공직선거법위반 등

주 문

1.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 나.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오○○ 및 같은 날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김○○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4.22. 및 2018. 5. 6. 각각 위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81), 2019. 9. 27.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다. 청구인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노2319),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위 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면서도 청구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2022. 6. 23. 청구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2도8646), 상고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2초기857). 대법원은 2023. 2. 2. 상고를 기각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3. 15.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체적 연혁을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만으로는 공표가 금지되는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이 공직후보자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허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직후보자의 비리나 부패에 대한 의혹 제기’와 같은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바, 이는 피선거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

공직에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언급할 때 어떤 표현이 비판이 아닌 ‘비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공직선거와 관련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단순히 ‘비방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그 금지 및 처벌의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이는 피선거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 (1)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중 ‘허위의 사실’ 부분과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 중 ‘비방’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의 표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1. 2. 25. 2018헌바223 결정에서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4. 선고2007도4294 판결 참조).

결국 선례조항의 문언의 의미 및 입법취지,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허위의 사실’ 부분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도 동일하게 원용되는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3. 7. 20. 2022헌바299 결정에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데 적합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입법목적의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비판 내지 의혹을 제기하려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나)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가) 헌법재판소는 현재 2010. 11. 25. 2010헌바53 결정에서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에서 ‘비방’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비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에서는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의 ‘비방’의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남을 헐뜯어 말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면 사생활에 관련된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 중 ‘비방’의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공직선거법에서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며, 법에서 사용된 맥락 또한 그러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인다(현재 2004. 11. 25. 2002헌바85 참조).

따라서 위 조항 중 ‘비방’ 부분은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에서 ‘비방’ 부분은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도 동일하게 원용되는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나)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입법목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장차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이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단일법이 제정되지 않아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개별 선거법으로 규제될 때부터 각 개별 선거법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유사한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하고 있었고 후보자에 대한 비방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4.3.16. 법률 제4739호로 선거에 관한 단일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후 내용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처럼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후보자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 또한 처벌하는 것으로, 비방행위의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각 개별

선거법에서 규정하던 후보자비방죄보다 그 처벌대상이 넓어졌다. 나아가 이 조항의 주체는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유권자나 언론도 그 주체가 된다.

‘비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비방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정한 비방의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남을 헐뜯어 말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면 그것이 사생활에 관련된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통상 선거는 유권자를 상대로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이므로 그 속성상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직 적합성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 신인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전할 경우 자신의 출마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정한 비방의 대상은 그것이 사실이기만 하면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는 불문한다. 그러나 만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다. 실제로 당해 사건을 비롯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과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법정형이 더 무거우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실익이 없다. 나아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사실로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직 적합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여 장차 실시될 선거를 오히려 더욱 혼탁하게 보이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닌 사실의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측면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 그 가벌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법정형이 더 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거나(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 이미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제264조).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위가 아닌 사실로써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위자를 정치적 공론의장에서 아예 내쫓아버리는 것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과 같이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 비방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일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일본 형법 제230조 제1항), 공직선거에 의한 공무원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인지,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별하지 않으며(위 형법 제230조의2 제3항), 이는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은 여러 선거 관련 법률에 명예훼손에 관한 독자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방행위는 형법상 비방죄 및 중상죄로 처벌하며(독일 형법 제186조 및 제187조), 국민의 정치적 생활영역에 관여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비방 및 중상이 행해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형법 제188조). 그러나 독일 형법은 비방죄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증명할 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를, 중상죄의 경우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그의 신용을 위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만을 처벌하므로,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비방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처벌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민사적인 구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명예훼손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그 진술이 거짓이고 상대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직자를 비방한 데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공적 사안에 관한 논의에서 진실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Garrison v. State of Louisiana, 379 U.S. 64, 74(1964)].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그 단서에서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해 두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는 공적 인물이고, 후보자들 사이의 공방, 유권자와 언론의 의혹제기 등을 통한 검증 과정 또한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또다시 가릴 필요성은 현저히 낮다. 한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따라 일단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그러한 사실을 표현한 사람은 고소·고발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해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소추될 위험성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재판절차에서 그러한 표현행위가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단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표현행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점까지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공익성이 입증되고 판단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의 성격을 띠는다면 그로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이 사생활에 대한 비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에 대응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형량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하여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의 특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법정형은 형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 및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규정 등 공직선거법상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 위반자에게는 형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이 부여된다.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일반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들어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아가 상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나 언론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직 적합성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본질에도 어긋난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에 관한 수사의 신속성 강조 규정, 단기 공소시효 규정, 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등은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선거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들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 자체의 위헌성과 본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형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하게 되더라도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이 선거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상대방에 대한 비방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거나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이란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고 이에 근거하여 최선의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은 유권자인 일반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불문하고 그것을 ‘비방’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인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정치와 공론의 장에 뛰어들어 사람이므로, 공직 적합성의 검증을 위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한 어느정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으로 말미암아 제한되는 행위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매우 크고 중대한 반면, 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명예보호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다소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행위자가 제약당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5. 결론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울러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2013. 6. 27. 2011헌바75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 지면 관계상 반대의견을 생략하오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s://www.ccourt.go.kr/site/kor/main.do>) 판례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